

와 F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칙 공포

-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9, 6, 28, 공포합니다.
- 2.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규칙 시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완 도 군 수

수신자 01.노, 02.도, 03.로

주무관 법무통계팀장 자치행정과장 복지행정국장

2019. 6. 28. ★군수 부군수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080 (2019. 6. 28.) 접수 기획예산담당관-7147 (2019. 6. 2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자치행정 / www.wando.go.kr 우 59124

과

전화번호 061-550-5212 팩스번호 061-550-5169 / 711jhk@korea.kr / 대국민 공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28일

완도군수 ____

완도군 규칙 제1192호

붙임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완도군 본청 담당관·과장의 분장사무 중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장 세부 분장사무 내역 제16호 및 안전건설과장 세부 분장사무 내역 제31호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완 3	도군 본	<mark>본청 담당관·과장의 분장사무</mark> (제5조 관련)	<u>완도</u>	트군 본	-청 담당관·과장의 분장사무(제5조 관련)
부 서 별		세부 분장사무 내역	부 서 별		세부 분장사무 내역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장	발과장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장	1 ~ 15	(현행과 같음)
	16 도시계획구역 내의 가로등 및 보도블록 관리			<u>16</u>	도시계획구역 내의 보도블록 관리
	17 ~ (생략) 39			17 ~ 39	(현행과 같음)
부 서 별		세부 분장사무 내역	부 서 별		세부 분장사무 내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장	1 ~ 30	(생략)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장	1 ~ 30	(현행과 같음)
	31 농어촌 가로등 시설 및 사후관리			<u>31</u>	도시계획 구역 및 농어촌 지역 내 가로등 시설·관리
	32 ~ 111	(생 략)		32 ~ 111	(현행과 같음)

게재(요청)일자	2019-06-03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6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소 부여사항이 있어 새로이 부여, 변경	「도로명주소법」제18조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제2항 및 동법 붙임과 같이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	(2019-06-3).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약산수산 주식회사	36360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415, 410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2길 7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1길 28-	59129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박옥희	3636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233-3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길 1-26	20081103	로급도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길급 도로구간이나 도로구간에 다른 도로구간이 있는경우 도로명 중복이 발생하여 법정마을명을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5	59116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장옥선	3636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23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길 29	20081103	로급도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길급 도로구간이나 도로구간에 다른 도로구간이 있는경우 도로명 중복이 발생하여 법정마을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길 2	59108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04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6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	공검사 확인증 교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였기에 동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교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였기에 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교부(공사완료 신고수리)내역

	점시	사용허가	공 사 내 역			준	공 검	사 신 청	d 자	교부
연번	허가 번호	위 치	목	적	면 적 (㎡)	주	소	성	명	(신고수리)일
1	2017 - 48	완도읍 정도리 산128 지선 ~ 소안면 이월리 산234 해상	도서지역 공급을 해저케 설 ^치	위한 이블	59,113.3	광주공 북구 ⁹ 22	우치로	한국전 광주전		2019. 6. 3.

2019년 6월 3일

완 도 군 수

게재(요청)일자	2019-06-03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6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소 부여사항이 있어 사로이 부여, 변경	「도로명주소법」제18조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제2항 및 동법 붙임과 같이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기	Ţ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3).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김승영	36364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726-2, 726-8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 2-248	20091229	마량에서 고금도로 연결되는 도로의 특성빈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111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04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6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소 부여사항이 있어 새로이 부여, 변경	「도로명주소법」제18조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제2항 및 동법 붙임과 같이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	(2019-06-04).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강영종	3636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25-14, 225-15, 225-17, 225-18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로 2	20081103	관광지 예송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로급 도로구간를 예송로 도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2길 23	59162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김지라	36367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9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맹선길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맹선길	59166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한경수	36366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68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월송길 11-1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52번길 31-1, 6-201 (청천동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04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0	6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	(2019-06-04).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완 도 군 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이봉석	36368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22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여동길 23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여동길 23	59135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04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6	6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	(2019-06-04).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4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	2편번호 고	지방법 소유자구분
임의대상	36369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20081103	로급도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길급 도로구간이나 도로구간에 다른 도로구간이 있는경우 도로명 중복이 발생하여 법정마을 🛭	00	0000 1호	점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07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7일

완 도 군 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인			면적	공사기간	피승인(ㅅ	l행)자	승인일	
(신고) 번 호	위 치	목 적	(m³)	(착수 및 준공예정일)	주 소	성	<u> </u>	
2019 - 08	금일읍 신구리 1570-1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21.75	2019. 6. 10. 2019. 9. 09.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47	천 * 표	2019. 6. 7.	

게재(요청)일자	2019-06-05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05).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5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게재(요청)일자	2019-06-11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허 가	OL			74	면 적			피 허 가 (승 인)자		=1 -1		
번 호	위	치	푹	적	(m²)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허기	· 일
2019 - 10	완도읍 <i>즉</i> 232-27		부잔교 /	시설 설치	24.0	2019. 6. 11. 2024. 6. 10.	완도군	완도읍	죽*어	촌계	2019.	6. 11.
2019 - 11	생일면 금 산1-1		방파제 /	시설 공사	183.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2019 - 12	금당면 £ 949-85		방파제 /	시설 공사	116.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2019 - 13	금당면 ^처 852-7			<u>'</u> 도로 공사	472.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2019 - 14	약산면 7 325-6			장 확장 장 공사	128.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2019 - 15	약산면 9 887-7		선착장 '	연장 공사	54.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2019 - 16	약산면 5 697-4		물양장 /	시설 공사	252.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2019 - 17	약산면 5 34-7 7		선착장 (연장 공사	202.5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2019 - 18	약산면 9 818-3			<u> </u> 도로 공사	249.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u></u> ' 수	2019.	6. 11.
2019 - 19	고금면 9 696-2		선착장 (연장 공사	85.0	2019. 6. 11. 2049. 6. 10.	완도군	완도읍	완도*	· 수	2019.	6. 11.

게재(요청)일자	2019-06-10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0).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완 도 군 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윤가영	3637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24-2, 92-17, 92-1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가용길 35-2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82-2	59122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0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0).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완 도 군 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장민성	36372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내리 265-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넙도104번길	20081103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기초구간을 설정하여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기초번호를 이용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넙도108번길	59159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1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게재(요청)일자	2019-06-13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완 도 군 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 인	OI =1		면적	공사기간	피승인(시	행)자	A0101
(신고) 번 호	위 치	목 적	(m³)	(착수 및 준공예정일)	주 소	성 명	승인일
2019	완도읍 죽청리	부잔교	24.0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죽*어촌계	2019. 6. 13.
- 09	232-27 지선	시설 설치	2019. 9. 16.			수 어 <u>디</u> 게	2017, 0, 13,
2019	생일면 금곡리	방파제	183.0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3.
- 10	산1-1 지선	시설 공사	105.0	2019. 9. 16.	선도한 선포함	인포 ㅜ	2019, 0, 13,
2019	금당면 육산리	방파제	116.0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3.
- 11	949-85 지선	시설 공사	110.0	2019. 9. 16.	선포한 선포함	선포 구 	2019, 0, 13,
2019	금당면 차우리	호안도로	472.0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3.
- 12	852-7 지선	시설 공사	472.0	2019. 9. 16.	선포한 선포급 	친포 구 	2019, 0, 13,
2019	약산면 장용리	선착장 확장	128.0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3.
- 13	325-6 지선	및 연장 공사	120.0	2019. 9. 16.	선포한 선포급 	친포 구 	2019, 0, 13,
2019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	54.0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3.
- 14	887-7 지선	연장 공사	34.0	2019. 9. 16.	선포한 선포 급	선포 구	2019, 0, 13,
2019	약산면 득임리	물양장	252,0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3.
- 15	697-4 지선	시설 공사	232.0	2019. 9. 16.	선포한 선포함	건포 구 	2019, 0, 13,
2019	약산면 해동리	선착장	202 F	2019. 6. 17.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3.
- 16	34-7 지선	연장 공사	202.5	2019. 9. 16.	선도한 선도함	신도 구 	2019, 0, 13,
2019	약산면 우두리	호안도로	249.0	2019. 6. 17.	아드그 아드으	완도* 수	2010 6 12
- 17	818-3 지선	연장 공사	249.0	2019. 9. 16.	완도군 완도읍	신도 구	2019. 6. 13.

게재(요청)일자	2019-06-12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7		7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2). 끝.					

완도군 고시 제2019- 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임의대상	36380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77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00000	1차	점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	P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임의대상	36381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96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길 27	20081103	로급도로에서 연결되어 있는 길급 도로구간이나 도로구간에 다른 도로구간이 있는경우 도로명 중복이 발생하여 법정마을	00	0000	1차	점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박상윤	3638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36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2길 4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2길 2	59162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임의대상	36382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1238-1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20081103	읍/면 지역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박		00000	1차	점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3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3). 끝.						

완도군 고시 제2019- 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임의대상	36384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48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서로 79	20081103	각지역에 로급 도로가 2개 이상이면 방위를 활용하여 도로		00000	1차	점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3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7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소 부여사항이 있어 사로이 부여, 변경	「도로명주소법」제18조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제2항 및 동법 붙임과 같이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3). 끝.								

완도군 고시 제2019- 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임의대상	3638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9번	20081103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기초구간을 설정하여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기초번호를 이용		00000	1차	점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7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김종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8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9 완도군 해수욕장 운영 등	2019 완도군 해수욕장 운영 등 고시						
내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완도군에서 지정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완도군 해수욕장 운영 등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19 - 180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완도군에서 지정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 도 군 수

1. 해수욕장 지정내역

대 초	OI T I	해안의 구성				
명 칭	위 치	길이(m)	폭(m)	관리상태		
신 지 명 사 십 리 해 수 욕 장	완도군 신지면 신 리	3,800	150	양 호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3,500	250	양 호		
신 지 동 고 해 수 욕 장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1,200	50	양 호		
약 산 가 사 해 수 욕 장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150	50	양 호		
청 산 지 리 해 수 욕 장	완도군 청산면 지 리	1,200	100	양 호		
청 산 신 흥 해 수 욕 장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340	200	양 호		
보 길 예 송 해 수 욕 장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1,000	30	양 호		
보 길 중 리 해 수 욕 장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900	50	양 호		
보 길 통 리 해 수 욕 장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800	30	양 호		
생 일 금 곡 해 수 욕 장	완도군 생일면 금곡리	500	50	양 호		

2.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연 번	구 분	개장기간	시 간
1	신 지 명 사 십 리 해 수 욕 장	7. 8. ~ 8. 25.	09:00 ~ 19:00
2	금 일 명 사 십 리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3	신 지 동 고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4	약 산 가 사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5	청 산 신 흥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6	청 산 지 리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7	보 길 예 송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8	보 길 통 리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9	보 길 중 리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10	생 일 금 곡 해 수 욕 장	7. 19. ~ 8. 18.	09:00 ~ 19:00

3. 해수욕장 시설현황

명 칭	기능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 화장실(11) · 샤워장/탈의실(9) · 음수대/취사대(4)	· 주차장(7), 야영장(4) · 숙박용텐트(155동), 상가(3동) · 물품보관소(1)	· 관리사무소(2) · 감시탑(8)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	· 화장실(5개소) · 샤워장(4개소) · 취사대(4개소)	· 야영장(2)	· 관리사무소(1) · 감시탑(4)
신 지 동 고 해 수 욕 장	· 화장실(1) 샤워장(1) · 음수대(1)	· 주차장(1), 야영장(1)	· 감시탑(1)
약 산 가 사 해 수 욕 장	· 화장실(2) · 샤워장(1) · 음수대(2)		
청산지리해수욕장	· 화장실(2), 샤워장(1) · 음수대(2)	· 주차장(1), 야영장(1)	· 관리사무소(1) · 감시탑(1)
청 산 신 흥 해 수 욕 장	· 화장실(1), 샤워장(1) · 음수대(2)	· 주차장(1), 야영장(1)	· 감시탑(1)
보 길 예 송 해 수 욕 장	· 화장실(2), 샤워장(2) · 음수대(4)		· 감시탑(1)
보 길 중 리 해 수 요 장	· 화장실(1), 샤워장(1) · 취사대(2)		· 감시탑(1)
보 길 통 리 해 수 욕 장	· 화장실(2), 샤워장(1) · 음수대(3)		· 감시탑(1)
생 일 금 곡 해 수 욕 장	· 화장실(1), 샤워장(1) · 음수대(3)	· 주차장(1), 야영장(1)	· 관리사무소(1) · 감시탑(1)

4. 해수욕장의 특징

명 칭	해수욕장의 특징
신지명사십리 해 수 욕 장	 길이 3.8km, 폭 100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하계 휴양지로써 가족단위 해수욕장으로 인기가 높다. 공기의 비타민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전국 최고이며, 모래찜질은 퇴행성 관절염과 신경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금일명사십리 해 수 욕 장	 길이 1.5km, 폭 150m의 넓은 백사장과 그 앞에 자리 잡은 소랑도, 다랑도, 섭도, 부도, 우도, 황제도, 원도 등 크고 작은 20여개의 섬과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 낸다. 인근의 유·무인도 부근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도 가능하며, 한때 이곳에 해당화가 가득했으나 지금은 300여평 규모의 모래사장에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신 지 동 고 해 수 욕 장	· 신지 명사십리 동쪽 10km 떨어진 동고리 마을에 위치한 아담한 해수욕장으로 특히 수 백 년 된 해송 300여 그루가 방풍림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 해변 앞 진섬(長島) 구멍섬(穴島)은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약 산 가 사 해 수 욕 장	· 완도읍에서 동북쪽 18km 지점에 자리한 약산도 남동쪽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150m 규모의 아담한 가족단위 해수욕장이다. 특히 주변에 동백나무, 후박나무, 잣밤나무 숲이 해변을 둥글게 감싸 안고 있어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준다.
청 산 지 리 해 수 욕 장	· 슬로시티'청산도'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몰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 길이 1.2km, 폭 100m 규모의 백사장이 펼쳐있으며 200년 이상 된 해송 800여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청 산 신 흥 해 수 욕 장	 · 지리 청송해변의 반대편에 위치한 청산도의 해수욕장으로 간조 시 드러나는 백사장이 매우 넓으며 (풀등이 만들어진다) 수심이 얕다. · 넓은 백사장에서 조개잡이 체험, 전통어로 방식의 고기잡이 체험을 할 수 있다.
보 길 예 송 해 수 욕 장	·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갯돌들로 이루어진 길이 1,000m 폭 30m 규모의 갯돌해변(청환석 碃環石)이다. · 특히, 해변의 방풍림(예송리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4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나무를 비롯해 팽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30여종의 목·초본류가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다.
보 길 중 리 해 수 욕 장	· 길이 900m, 폭 50m 규모의 은빛 모래해변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마을 방풍림인 송림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 주변 바닷길은 옛 탐라(제주)로 가는 길목으로 우암 송시열이 제주로 귀양 가는 도중 이곳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그리움에 대해 글을 남겨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보 길 통 리 해 수 욕 장	· 길이 800m, 폭 30m의 모래해변으로 주변에 목섬, 기섬, 토끼섬, 갈마섬, 소도, 당사도 등 크고 작은 소안군도의 섬들이 펼쳐져 있으며 인근 섬이나 갯바위에서 연중 바다낚시가 가능하다.
생 일 금 곡 해 수 욕 장	· 생일도의 진산인 백운산의 서쪽에 위치한 길이 500m, 폭 50m 규모의 소규모 해수욕장으로 백사장의 모래는 조개껍데기가 부서져 쌓였다고 하며 아담하고 포근하여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합하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1)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및 시설물 설치
 -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또는 야영
- 3) 지정된 장소 밖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개장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4)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지입시키는 행위
- 5) 관리청의 허가 없는 불꽃놀이
- 6)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행위
- 7) 개장시산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정하여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 8) 백사장의 보호를 위하여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 9)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건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2) 해수욕장 이용자는 다음의 경우 관리청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해양오염이 발생 및 발생우려가 있어 관리청이 이용을 통제하는 경우
- 2) 해파리 등 유해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어 관리청이 이용을 통제하는 경우
- 3) 상어 등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어 관리청이 통제하는 경우
- 4) 기상악화로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이 되어 관리청이 통제하는 경우
- 5) 태풍 등 기상특보 상황으로 관리청의 통제가 있는 경우
- 6) 전염병의 발생·유행으로 관리청의 통제가 있는 경우
- 7) 이안류의 발생 및 발생우려로 관리청이 긴급통보 또는 통제하는 경우

6. 이용안내

○ 해수욕장 관리담당 및 이용 시 불편사항 신고 연락처

	해 변 명 소 재 지					담	당부서	운영	비고				
	에 匸	<u>'</u> o		7.	세 시		담	담당부서		연락처	단 체	대표자	비고
신 명 해	사 수	십 욕	지 리 장	완도군 리	신지면	신	_	사 십		061-550-6921	명사번영회 임촌리이장 신 리이장 내정리이장 대평리이장	황용연 이기만 정용안 김용태 황인복	
금 명 해	사 수	십 욕	일 리 장	완도군 송	금일읍	월 리	급	일	읍	061-550-6196	금일청년회	조지원	
신 해	지 수	동 욕	고 장	완도군 고	신지면	동 리	신	지	면	061-550-6362	동고청년회	이성욱	
약 해	산 수	가 욕	사 장	완도군 동	약산면	해 리	약	산	면	061-550-6455	약산청년회	이도승	
청 해	산 수	지 욕	리 장	완도군 리	청산면	지	청	산	면	061-550-6493	지리새마을회	권영길	
청 해	산 수	신 욕	아 상	완도군 흥	청산면	신 리	청	산	면	061-550-6493	신흥새마을회	주창민	
보 해	길 수	예 욕	송 장	완도군 송	보길면	예 리	보	길	면	061-550-6625	예송새마을회	김기봉	
보 해	길 수	중 욕	리 장	완도군 통	보길면	중 리	보	길	면	061-550-6625	중리새마을회	김용남	
보 해	길 수	통 욕	리 장	완도군 통	보길면	중 리	보	길	면	061-550-6625	통리새마을회	황정환	
생 해	일 수	금 욕	곡 장	완도군 곡	생일면	급리	생	일	면	061-550-6672	금곡부녀회	김애경	

※ 해수욕장 총괄관리 업무 담당자 :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시설팀 주무관 김종표 ☎ (061) 550 - 5426

	해 수	욕장	현 황				
명 칭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위 치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리 일원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A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3,800m(하폭: 200 m) ○ 수심: 깊은 곳 3.0m, 평균 1.4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유, 모 ○ 과거 사망사고 발생여부 : 유, 모 	위치도(1/5,0 * 위치도 규격 등 물놀이 장소 위험수준	F-A				
안전시설 설치 현황	설치현황 ○ 위험표지판 : 3 EA(국고 : EA) ○ 이동식거치대 : - EA(국고 : EA) ○ 인명구조함 : 3 EA(국고 : EA) ○ 구명환 : 30 EA(국고 : EA) ○ 구명조끼 : 30 EA(국고 : EA) ○ 구명로프 : 2개/10EA/m(국고 : / EA/m)	위험표지단	사진대지 안전시설 한 안전감시 망루 제트스키 구조선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32명		나설 : 수영경계선 설치(3,200m) 관 장소 :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관리사무소				

	해 수	욕장	현 황				
위 치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	위 치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산148-7번지 일원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B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 1,700 m(하폭 : 100 m) ○ 수심 : 깊은 곳 3.0 m 평균 1.5 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 유, 모 	위치도(1/5,00 * 위치도 규격 등 물놀이 장소 위험수준					
	설 치 현 황	사진대지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위험표지판 : 2 EA(국고 : EA) ○ 이동식거치대 : 2 EA(국고 : EA) ○ 인명구조함 : - EA(국고 : EA) ○ 구명환 : 11 EA(국고 : EA) ○ 구명조끼 : 4 EA(국고 : EA) ○ 구명로프 : 16/240EA/m(국고 : / EA/m)	사진1	안전시설 사진 2 사진 3 사진 4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4명		나설 : 수영경계선 설치(1,000m) 관 장소 : 구명조끼,이동식거치대,구명환,구명조끼,구명로프는 관리실 밑 창고에 보관				

	해수욕장 현황								
위 치	신지 동고해수욕장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일원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B 등급							
	지 역 특 성	사진대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 1,200m(하폭 : 50 m) ○ 수심 : 깊은 곳 3 m, 평균 1.5 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 요, 무 ○ 과거 사망사고 발생여부 : 유, 모	위 치 도 원 경 근 경 # 위치도 규격 준수 물놀이 장소 메우위험 위 험 보 통 안 전 메우안전 위험수준							
	설 치 현 황	사 진 대 지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위험표지판 : 2 EA(국고 : EA) ○ 이동식거치대 : - EA(국고 : EA) ○ 인명구조함 : 1 EA(국고 : EA) ○ 구명환 : 5 EA(국고 : EA) ○ 구명조끼 : 5 EA(국고 : EA) ○ 구명로프 : 3/15EA/m(국고 : / EA/m)	안전시설 구명환,구명로프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고무보트 기 타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2명	 ○ 기타 안전시설 : 수영경계선 설치(150m), 타포린 50m ○ 안전시설 보관 장소 : 구명조끼 등은 청년회 사무실 보관 - 61 - 							

	해 수	욕장	현 황·		
명 칭	약산 가사해수욕장	위 치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934-2번지 일원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B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135m(하폭: 1.5m) ○ 수심: 깊은 곳 2.5m, 평균 1.0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유, 모 ○ 과거 사망사고 발생여부 : 유, 모 	위치도(1/5,000~50,000) 원 경 근 경 * 위치도 규격 준수 물놀이 장소 매우위험 위험 보통 안전 매우안전 위험수준			
	설 치 현 황	사 진 대 지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위험표지판 : 1 EA(국고 : EA) ○ 이동식거치대 : 1 EA(국고 : EA) ○ 인명구조함 : 1 EA(국고 : EA) ○ 구명환 : 5 EA(국고 : EA) ○ 구명조끼 : 12 EA(국고 : EA) ○ 구명로프 : 50/3 EA/m(국고 : 50/3 EA/m)	사진1	안전시설 사진 2 사진 3 사진 4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2명		설 : 수영경계선 설치(150m) 상 장소 : 약산면사무소 창고 보관		

		 수 욕 장 현 황		
명 칭	청산 지리해수욕장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지리 산970-5번지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A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위치도(1/5,000~50,000) 원경 근경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 1,200m(하폭 : m) ○ 수심 : 깊은 곳 3m, 평균 1.0 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 유, 모	* 위치도 규격 준수		
		물놀이 장소 매우위험 위험 보통 안전 매우안전 위험수준 ○		
	설 치 현 황	사진대지		
	○ 위험표지판 : 2 EA(국고 : EA)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이동식거치대 : 1 EA(국고 : EA) ○ 인명구조함 : 1 EA(국고 : EA) ○ 구명환 : 10 EA(국고 : EA) ○ 구명조끼 : 1 EA(국고 : EA) ○ 구명로프 : 10/ EA/m(국고 : / EA/I	사진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2명	○ 기타 안전시설 : 수영경계선 설치 ○ 안전시설 보관 장소 : 청산면사무소 - 63 -		

	해 수	욕장현황
명 칭	청산 신흥해수욕장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578-4번지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A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400m(하폭: m) ○ 수심: 깊은 곳 2m, 평균 1.0 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유, 모 ○ 과거 사망사고 발생여부 : 유, 모 	위치도(1/5,000~50,000) 원경 근경 * 위치도 규격 준수 물놀이 장소 매우위험 위험 보통 안전 매우안전 위험수준
	설 치 현 황	사 진 대 지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위험표지판 : 1 EA(국고 : EA) ○ 이동식거치대 : - EA(국고 : EA) ○ 인명구조함 : 1 EA(국고 : EA) ○ 구명환 : 10 EA(국고 : EA) ○ 구명조끼 : 1 EA/m(국고 : EA/m)	안전시설 사진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2명	○ 기타 안전시설 : 수영경계선 설치 ○ 안전서설 : 청산면사무소

	해 수 욕 장 현 황							
명 칭	보길 예송해수욕장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일원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A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 1,000m(하폭 : 30m)		위치도(1/5,000~50,000) 원경 근경 # 위치도 규격 준수 물놀이 장소 매우위험 위험 보통 안전 매우안전 위험수준					
	설치현황	Γ			사진대지			
OLTALIA	○ 위험표지판 : 2 EA(국고 : EA ○ 이동식거치대 : 1 EA(국고 : EA		 인명구조함	위험표기	<u>안전시설</u> 지판 ⁹	위험표지판	고무보트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인명구조함 : 2 EA(국고 : E○ 구명환 : 10 EA(국고 : E○ 구명조끼 : 8 EA(국고 : E	EA) EA) EA) EA/m)		CONTROL CONTRO		A MARIET LANGUAGE AND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3명		○ 기타 ⁶⁵ - ○ 기타 ^안 전시 ○ <u>안전시설</u> 보관			대는 면사무소	- 수방창고 보관	

	ō	세 수	욕장	현 황·
위 치	보길 중리해수욕장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일원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B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위치도(1/5,00	0~50,000) 원경 근경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 900m(하폭 : 50m) ○ 수심 : 깊은 곳 3.0m, 평균 1.5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 유, 모 ○ 과거 사망사고 발생여부 : 유, 모 		* 위치도 규격 전 물놀이 장소 위험수준	
	설 치 현 황			사 진 대 지
		EA) EA)	인명구조함	안전시설 남 인명구조함 고무보트 위험표지판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인명구조함 : 1 EA(국고 : E ○ 구명환 : 5 EA(국고 : E ○ 구명조끼 : 2 EA(국고 : E	EA) EA) EA) EA/m)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3명			시설 : 수영경계선 설치 만 장소 : 구명조끼, 이동식거치대는 면사무소 수방창고 보관

	해 수 욕 장 현 황							
명 칭	보길 통리해수욕장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일원					
지 역	관리지역	관리등급 B 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800m(하폭: 30m) ○ 수심: 깊은 곳 3.0m, 평균 1.5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유, 모 ○ 과거 사망사고 발생여부 : 유, 모 	위치도(1/5,00 * 위치도 규격 준 물놀이 장소 위험수준						
안전시설 설치 현황	설치현황 ○ 위험표지판 : 2 EA(국고 : EA) ○ 이동식거치대 : 2 EA(국고 : EA) ○ 인명구조함 : 1 EA(국고 : EA) ○ 구명환 : 2 EA(국고 : EA) ○ 구명조끼 : 5 EA(국고 : EA) ○ 구명로프 : 5 /20EA/m(국고 : / EA/m)	인명구조힘	사진대지 안전시설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고무보트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3명		설 : 수영경계선 설치 난 장소 : 구명조끼, 이동식거치대는 면사무소 수방창고 보관					

	해 수	욕장	현 황
명 칭	생일 금곡해수욕장	위 치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금곡리 산176지대
지 역	금곡해수욕장	관리등급	B등급
	지 역 특 성		사 진 대 지
물놀이 장소 현황	 ○ 물놀이 구간: 445m(하폭: 55m) ○ 수심: 깊은 곳 6m, 평균 2.0m ○ 위험구역 포함계획 : 요, 무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계획: 요, 무 ○ 과거 사망사고 발생여부 : 유, 모 	위치도(1/5,00	00~50,000) 원경 근경
		* 위치도 규격 를 물놀이 장소 위험수준	
	설 치 현 황		사 진 대 지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위험표지판 : 2 EA(국고: EA) ○ 이동식거치대: - EA(국고: EA) ○ 인명구조함: 1 EA(국고: EA) ○ 구명환: 1 EA(국고: EA) ○ 구명조끼: 3 EA(국고: EA) ○ 구명로프: 3/ EA/m(국고: / EA/m)	물놀이 안 Particular and the second of the sec	안전시설 전 수칙 사망사고 표지판 구명보트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 안전관리요원 : 2명		시설 : 수영경계선 설치 관 장소 : 구명조끼는 면사무소 민방위창고에 보관

게재(요청)일자	2019-06-20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주정화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8	8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내용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기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제25조 및 전라남5 N이용규제기본법 제	E 사무위임조례 제2조 7	구정에 의하여

완도군 고시 제2019 - 181호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 운동장)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20

완도군수

- 1.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운동장) 변경 결정 조서 : 다음
- 2.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운동장) 변경 결정 도면 : 게재 생략
- 3.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50-56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변경-운동장) 결정(변경)조서

1. 군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

1)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m²)		최 초	비고
丁亚	표시 번호	시설명	종 류	T 1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刊工
변경	1	운동장	운동장	완도읍 가용리 1256-2 일원	66,898	감) 65	66,833	건고 제445호 (1984.11)	

■ 운동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운동장	· 변경 · 면적 : 감) 65 m²	· 기 조성된 운동장 시설 지적 분할 및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게재(요청)일자	2019-06-17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8	8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7).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4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42번길 116	20190617	건물신축	20081103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기초구간을 설정하여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기초번호를 이용하	(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95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통리길 56-1	20190617	건물신축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41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길 67-48	20190617	건물신축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여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조진이	3642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69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일구길 10-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대야일구길 10-1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박철홍	3642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4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길 67-4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길 (59110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9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8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허 가	OI =	-1		T-J	면 적	=1313131	ᆈᇶ	네가 (승	응 인)기	다	=1 -1 01
번 호	위 ᅔ	\	목	적	(m²)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허가일
2019 - 21	소안면 진연 1230-6 기		호안. 확장		172.0	2019. 6. 19. 2049. 6. 18.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9.
2019 - 22	보길면 중년 337-6 지		호안. 확장		68.0	2019. 6. 19. 2049. 6. 18.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9.
2019 - 23	약산면 해! 산91 지		호안. 개설		303.0	2019. 6. 19. 2049. 6. 18.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9.
2019 - 24	신지면 신 885-6 지		선 ^츠 연장		354.0	2019. 6. 19. 2049. 6. 18.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9.
2019 - 25	신지면 송 ⁻ 669-9 지		방 ^교 연장		33.0	2019. 6. 19. 2049. 6. 18.	완도군	완도읍	완도*	수	2019. 6. 19.

게재(요청)일자	2019-06-19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8	8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9).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장채순	36422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29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1130-	20081103	읍/면 지역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길 :	59136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9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8	8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2019-06-19).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고래완	36424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167, 167-5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북로 565-2	20081103	각지역에 로급 도로가 2개 이상이면 방위를 활용하여 도로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북로 565-23	9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김만석	36423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304-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서로 363-3	20081103	각지역에 로급 도로가 2개 이상이면 방위를 활용하여 도로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미라20번길 2	59154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19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8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기	<u>-</u>						
	2. 도로명주소 고시문	(2019-06-19).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히종호	36425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71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송용항길 197	20110210	주민의견수렴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송용항길 2	59142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21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박경화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8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고시(신지초등학교 외 1개소)					
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 6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 「어린아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 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완도군 고시 제2019-187호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1조 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9. 6. 24.

완 도 군 수

1. 관련근거

- O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용

연번	시설명	시설종류	위 치	사 유	비고
1	신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시설장의	
2	신지초등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전시인 대곡48번길 37	신청에 의해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061-550-5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1부.

【위 치 도】

신지초등학교, 신지초등병설유치원(신규 지정) :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48번길 37





게재(요청)일자	2019-06-21	담당부서	환경산림과	조아랑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원도군 고시 제201	9-18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	ュ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	2019년 3차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3차 성	1. 사 업 명 : 2019년 3차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						
	2. 위 치 : 생일면 유서리	2. 위 치 : 생일면 유서리 금곡리 백운산 일원						
	3. 사 업 량 : 등산로 15km							
	4. 사업대상 용지 : 붙임참고							
	5. 공고기간 : 2019. 6. 21. ~ 2019. 7. 10. (20일간)							
	6. 의견수렴기간 : 공고기간	6. 의견수렴기간 : 공고기간 내						
내용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장소 : 완도군 환	가. 제출장소 : 완도군 환경산림과 산지보호팀 업무담당						
	나. 제출기한 : 2019. 7.	10.(수)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완도 061-550-5499) 송부	다. 제출방법 : 우편[완도군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및 팩스(☎ 061-550-5499) 송부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본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의 일체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군 환경산림과 신	<u>-</u> 지보호팀(061-550-	-5532)으로 연락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3차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3차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

2. 위 치: 생일면 유서리, 금곡리 백운산 일원

3. 사 업 량 : 등산로 15km

4. 사업대상 용지

				ş	용지내	역			토 지 소	유 자	
분	읍면동	리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비고
	생일	금곡	산93			임	2,380	51	미상	황중*	
	생일	금곡	산144			임	49,983	286		심옥*	
	생일	금곡	산146			임	83,207	417		허재*	
	생일	금곡	산149			임	24,198	288		박춘*	
	생일	금곡	산152			임	26,479	491		이전* 외2	
	생일	금곡	산156			임	5,058	181		전종*	
완도군	생일	유서	산120	-	13	임	8,529	5		문수*	
	생일	금곡	산74	-	6	임	33,050	5		김영*	
	생일	유서	산87	_	6	임	21,719	27		김봉*	
	생일	유서	산87	-	5	임	10,116	3		범정*	
	생일	금곡	산74	-	2	임	64,265	15		김임*	
	생일	금곡	산87	-	7	임	29,455	37		이원*	
	생일	유서	441			임	13,162	28		지기*	

5. 공고기간: 2019. 6. 21. ~ 2019. 7. 10. (20일간)

6. 의견수렴기간 : 공고기간 내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장소 : 완도군 환경산림과 산지보호팀 업무담당

나. 제출기한 : 2019. 7. 10.(수)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완도군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및

팩스(☎ 061-550-5499) 송부

-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본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의 일체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환경산림과 산지보호팀(061-550-553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1.

완 도 군 수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	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랍	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인 경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u>5</u> :)
	의 견				
	기 타				
의견제출 내용 의 견 (전화번호: 기타 기타 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u>!</u>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유의 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게재(요청)일자	2019-06-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8	8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소 부여사항이 있어 사로이 부여, 변경	「도로명주소법」제18조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제2항 및 동법 붙임과 같이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	(2019-06-21). 끝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정금지	36427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2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46-	20081103	읍/면 지역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로 146-7		1차	소유자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정미정	36426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 925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4길 6	20160922	마을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3길 31	59151	1차	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24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9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허 가	01 =1		면적	피 허 가 (승	=1 71 01		
번 호	위 치	목 적	(m²)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허가일
2019 - 26	보길면 중통리 20-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860.6	2019. 6. 24. 2029. 6. 23.	완도군 노화읍	정 * 석	2019. 6. 24.
2019	신지면 대곡리 1248-5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559.4	2019. 6. 24. 2024. 6. 23.	완도군 신지면	차 * 혁 외 1인	2019. 6. 24.

게재(요청)일자	2019-06-25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9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고 수리) 하였기에 같은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완 도 군 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내역○

승인	OI =I	무 저 면적		공사기간	피승인(시행)자		√ 0101	
(신고) 번 호	위 치	목 적	(m³)	(착수 및 준공예정일)	주 소	성 명	승인일	
2019 - 18	보길면 중통리 20-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860.6	2019. 6. 30. 2020. 6. 29.	완도군 노화읍	정 * 석	2019. 6. 25.	
2019 - 19	신지면 대곡리 1248-5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559.4	2019. 6. 30. 2020. 6. 29.	완도군 신지면	차* 혁 외 1인	2019. 6. 25.	

게재(요청)일자	2019-06-25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9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소 부여사항이 있어 사로이 부여, 변경	「도로명주소법」제18조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제2항 및 동법 붙임과 같이			
내용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2. 도로명주소 고시문.	프.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소유자구분
임의대상	3642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39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565	20081103	완도군 옛지명인 청해진 명칭으로 도로명		00000	1차	점소유자

게재(요청)일자	2019-06-25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박서현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	9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고시					
내용	제27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득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완도군 고시 제2019 - 193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고시

제27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득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6. 25.

완 도 군 수

201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고시

(단위: 백만원)

□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	결 산 액		잉 여 금				
회계별		세 입	세 출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86,512	605,295	448,157	157,137	101,452	10,584	45,101	
일반회계	562,875	580,660	428,866	151,793	99,296	10,401	42,096	
특별회계	23,637	24,635	19,291	5,344	2,156	183	3,005	

□ 기금결산

전년도말 조성액	조 성 액	사 용 액	당해연도 조성액
7,310	2,100	292	9,118

□ 채권결산

(단위: 백만원)

(단위: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당해연도 조성액
5,007	130	342	4,795

□ 채무결산

(단위: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발 생 액	소 멸 액	당해연도 조성액
-	-	-	-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천㎡,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	량	36,025	228	45	36,208
면	적	22,234	84	52	22,266
금	액	464,936	10,352	1,778	473,510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 보유액
수 량	1,013	118	24	1,107
금 액	6,975	973	187	7,761

□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합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562,875	583,444	580,660	425	2,359
지방세수입	16,318	18,590	17,221	350	1,019
세외수입	12,030	15,991	14,576	75	1,340
지방교부세	225,457	233,467	233,467	-	-
조정교부금	6,439	9,815	9,815	-	-
보조금	160,194	163,131	163,131	_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42,437	142,450	142,450	-	-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합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3,637	26,850	24,635	-	2,21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088	18,622	18,412	-	210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28	831	19	-	812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특 별 회 계	851	1,997	804	-	1,1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69	1,188	1,188	-	-
간 척 지 구 농 지 기 금 특 별 회 계	18	13	13	-	-
농 공 지 구 (단 지) 조 성 관 리 특 별 회 계	3,483	4,199	4,199	-	-
완 도 군 기 반 시 설 부 담 금 특 별 회 계	-	-	-	-	-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합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562,875	428,866	99,297	6,654	28,058
일반공공행정	34,999	30,467	2,230	57	2,245
공공 질서및안정	9,513	6,576	1,971	123	843
교 육	3,269	3,219	-	1	49
문 화 및 관 광	53,513	30,942	20,644	317	1,610
환 경 보 호	68,487	39,708	26,749	347	1,683
사 회 복 지	90,359	85,424	2,647	629	1,659
보 건	12,878	11,510	768	202	398
농림해양수산	130,932	91,753	26,456	4,236	8,487
산업·중소기업	10,297	6,851	3,283	2	161
수송및교통	18,798	14,421	3,266	112	999
국토및지역개발	57,533	44,003	11,283	628	1,619
예비비및기타	72,297	63,992	-	-	8,305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합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23,637	19,291	2,156	214	1,976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8,088	15,137	2,156	195	600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28	-	-	-	28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특 별 회 계	851	-	-	-	8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69	1,148	-	19	2
간 척 지 구 농 지 기 금 특 별 회 계	18	6	-	-	12
농 공 지 구 (단 지) 조 성 관 리 특 별 회 계	3,483	3,000	-	-	483
완 도 군 기 방 시 설 부 담 금 특 별 회 계	-	-	1	-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X	대무회계과목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유 동 자 산	180,133	157,422	13,572	9,139	-
	투 자 자 산	6,446	5,900	546	-	-
	일반유형자산	97,577	96,958	619	-	~
자산	주 민 편 의 시 설	205,327	204,908	419	-	-
	사 회 기 반 시 설	1,444,783	1,312,660	132,010	113	-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1	61	1	1	-
	자 산 총 계	1,934,327	1,777,909	147,166	9,252	-
	유 동 부 채	15,269	14,028	1,241	-	~
부채	장기차입부채	-	1	ı	-	-
구세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1,920	21,920	ı	-	-
	부 채 총 계	37,189	35,948	1,241	ı	-
	고 정 순 자 산	1,736,371	1,603,327	132,929	115	-
순자산	특 정 순 자 산	9,137	-	-	9,137	-
	일 반 순 자 산	151,630	138,634	12,996	-	-
	순자산총계	1,897,138	1,741,961	145,925	9,252	-

□ 기능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마=다-라)	총원가(가)	사업수익(나)	순원가 (다=가-나)	내부거래(라)
I. 사업순원가	279,293	282,628	3,335	279,293	1
일반공공행정	19,669	19,962	293	19,669	-
공공질서및안전	3,413	3,413	-	3,413	1
교 육	3,228	3,228	-	3,228	-
문 화 및 관 광	15,629	15,881	252	15,629	-
환 경 보 호	26,925	27,704	779	26,925	-
사 회 복 지	83,978	84,102	124	83,978	-
보 건	7,824	9,433	1,609	7,824	-
농림해양수산	74,364	74,366	2	74,364	-
산업·중소기업	2,893	2,893	-	2,893	-
수 송 및 교 통	9,837	9,850	13	9,837	-
국토및지역개발	31,533	31,796	263	31,533	-
व्या मा मा	-	-	-	_	-
기 타	-	-	-	-	-
Ⅱ. 관리운영비	68,479	-	84,001	-	(15,522)
Ⅲ. 비배분비용	15,102	-	15,102	-	-
IV. 비배분수익	18,067	-	18,067	-	-
V. 재정운영순원가 (+ + - V)	344,807	-	360,329	-	(15,522)
VI. 일반수익	417,041	-	432,563	_	(15,522)
VII. 재정운영결과 (V-VI)	(72,234)	-	(72,234)	_	-

□ 성질별 재정운영표

내부거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재무회계과목 합계 자체조달수익 40,103 31,570 8,377 156 397,966 396,081 289 정부간이전수익 1,596 수익 기 타 수 익 373 3,370 10,856 1,669 (15,522)수 익 총 계 438,442 431,021 20,829 2,114 (15,522)인 거 76 비 73,923 73,847 영 130,200 유 143,019 12,549 270 비 정부간이전비용 4.183 3,261 922 비용 민간등이전비용 123,387 135,816 3,093 (15,522)НI 21,696 18,339 3,357 기 타 용 계 366,208 비 용 총 361,463 19,997 270 (15,522)운영차액 (72,234)(69,558)(832)(1,844)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 순자산변동표

내부거래 재무회계과목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기 초 순 자 사 1,814,928 1,668,643 138,748 7,537 재 정 운 영 결 과 (72,234)(69,558)(1,844)(832)순 자 산 의 증 가 10,660 6,345 4,315 기타순자산의증가 10,660 4,315 6,345 555 순자산의감소 685 130 양여·기부로 생긴 6 6 산 감 679 549 기타 순자산의감소 130 9,252 기말순자산 1,897,138 1,741,961 145,92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완 도 군 (세무회계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목록

순 번	해당 부서	제 목	페이지
계		22건	
1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축산과	사업비 예산편성 미비로 예비비 집행 개선	2p
2	세무회계과	세입금 징수 집중 관리 철저	4p
3	전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예산운용 방안 검토	7p
4	세무회계과	청사 관리 사업추진 소홀로 이월액 과다 발생	11p
5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예산 관리 소홀로 진행 중인 사업비 불용처리	13p
6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특별회계 체납세입금 징수관리 철저	15p
7	보건의료원	세외수입 (의료사업) 청구 및 수납업무 철저	17p
8	세무회계과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 강화	18p
9	세무회계과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철저	20p
10	전 부서	보조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불용사업	22p
11	세무회계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집중관리 미흡	26p
12	관광정책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기금사업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	29p
13	관광정책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	32p
14	세무회계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작성오류	34p
15	세무회계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기재오류(1)~(4)	36p
16	세무회계과	공유재산현황표 잔액 불일치 조정	41p
17	세무회계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44p
18	전 부서	성과계획서 지표 달성율 0% 및 불합리한 성과 지표 개발	46p
19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소홀	49p
20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	51p
21	주민복지과 지역개발과	지방보조금 사업 정산 검사 소홀	53p
22	전 부서 (세무회계과)	물품관리(정수와 사용기준) 철저	55p

1. 사업비 예산편성 미비로 예비비 집행 개선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 혀 황

<예비비 집행사항>

(단위: 천 원)

소관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
합계		119,145	98,311	20,834	
	AI 방역 대책	15,700	15,200	500	고병원성 AI차단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금류 수매 도태
농 업	<i>'</i>	11,945	7,147	4,798	<i>'</i>
축산과	가축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10,500	10,500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	81,000	65,464	15,536	가축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문제점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 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 농업축산과 AI 방역대책, 가축폭염 피해 예방은 매년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측된 사항이므로 예산에 적정 소요액을 사전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및 과다한 예비비 집행 잔액 발생의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예방 및 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에 사전 편성 할 것을 권고함.

□ 조치계획

《기획예산담당관》

- 연례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차단시설 운영 및 약품 구입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도 예비비로 승인된 '가금류 수매 도태' 비용은 실제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재해 상황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추후 동일사례가 반복될 경우 반영토록 하겠음.
- '가축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의 경우는 매년 반복하여 지원한 사항은 아니며, 2018년도에 처음으로 예비비 승인된 사항임. 그러나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각종 폭염피해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음.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 ☞ 농업축산과 편성 예비비 농축산 재해, 구제역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함.
- 농축산재해 및 구제역 발생을 예상하여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하겠음.

2. 세입금 징수 집중 관리 철저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 원)

~ -	예산 현액	징수	미숬납	비율			٨	유 별			
연도	연액 (A)	징수 결정액	미수납 액 (B)	비율 (C/A)	무 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국외 이주	기타
2018	562,874,774	583,444,427	2,359,377	0.41%	78,499	18,410	1,856,943	128,310	-	24,828	252,386
2017	538,583,954	547,106,623	2,707,687	0.50%	612,078	17,322	1,958,421	-	107,735	-	12,129
2016	507,097,501	518,844,829	2,465,509	0.48%	56,993	102,055	1,258,056	-	250,366	-	514,588

○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주요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분석 (미수납액의 78.7%)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 환급현황>

(단위: 천 원)

a.e.		징수	과오납	사 유 별					
연도	예산현액	결정액	과오납 반환액	행정 기 관 착오	납세자 권라7제	납세자 착오	차량 <i>,</i> 미등기	국세 경정	기타
2018	562,874,774	583,444,427	799,154	57	170	17,815	67,326	27,995	685,792
2017	538,583,954	547,106,623	198,698	3,983	8,676	9,614	-	-	173,930
2016	507,097,501	518,844,829	198,917	26	111	1,574	-	1	196,509

-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 2018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전라남도 행정착오로 타군 국 고보조금 500백만원이 우리군으로 송금됨
- 자동차세 일시 납부 후 변동에 따라 환급 조치.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

(단위: 천 원)

		지스	브나	사 유 별							
연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불납 결손액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 불명	무재산	평/액 부족	기타	
2018	562,874,774	583,444,427	425,348	55,401	491	35,929	79,308	251,753	757	1,709	
2017	538,583,954	547,106,623	334,246	10,526	-	5,609	126,173	61,377	-	130,561	
2016	507,097,501	518,844,829	480,142	37,009	ı	-	305,987	137,041	-	104	

○ 일반회계 세입금 매년 결손처분 대상이 행방불명, 무재산이 대부분으로 결손 처분액의 77.8%를 차지함.

□ 문제점

- 어제입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 및 세입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 결정액에 대한 차질 없는 수납이 중요하는 바 미수납액 및 과오납 반환,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 운영에 저해가 되고 있음.
- 또한, 행정 착오 등의 사유로 과오납 발생은 행정의 신뢰도를 상실하고 세무 업무를 가중 시키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세입금 징수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세무 연찬으로 과오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 담금 징수 등에 있어 부서 간 협조체제 강화.
-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판단으로 결손처분 사유 발생 시 결손처분 검토 권고.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② 2018년 미수납액은 2,359,377천원으로 2016년 미수납액 2,465,509천원, 2017년 미수납액 2,707,687천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주요 미수납 사유가 납세태만으로, 앞으로 징수팀과 해당 부서 담당자간의 협조를 통한 이월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상반기), 세외 수입 징수 일제정리 기간 운영(하반기) 등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으 로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음.
-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판단으로 결손처분 사유 발생 시 결손처분 검토 권고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내 결손처분 실시 관련 공문 발송 등 해당 부서 및 읍·면 담당자와 협조하여 결손 처분 실시 독려, 결손처분 방법 교육 및 안내 등을 꾸준히 펼쳐 나아 가도록 하겠음.

3.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예산운용 방안 검토

(소관부서: 전부서)

□ 현 황

<세출결산 총괄 및 예산 이월액 내역 >

(단위: 천 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현액 (A)	562,874,774	538,583,954	507,097,502
세출결산액 (B)	428,866,370	404,628,229	394,553,728
이월액 (C)	99,296,450	99,247,414	82,579,186
비율 (C/A)	8.59%	8.20%	7.77%
집행잔액 (D=A-B-C)	34,711,954	34,708,311	29,964,588
비율 (D/A)	6.17%	6.44%	5.91%
계 (C+D)	134,008,404	133,955,726	112,543,774
비율 (C+D)/A	23.81%	24.87%	22.19%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한 사항으로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8.59%, 집행잔액은 6.17%이며,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 합계 비율은 23.81%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은 매년 증가 하고 있음.

<세출예산 이월액 세부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건수		016년 201		17년(A)	20	2018년(B)		감(B-A)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78	82,579,186	203	99,247,414	200	99,296,450	△3	49,036
명시이월	67	28,478,188	84	34,786,234	127	43,731,104	43	8,944,871
사고이월	83	14,718,155	84	20,278,979	34	7,210,471	△50	△13,068,507
계속비이월	28	39,382,843	35	44,182,202	39	48,354,874	4	4,172,672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은 43건 8,945백만원 증가하고 사고이월액은 50건 13,06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4건 4,173백만원 증가하였 음.

<보조금 반납금 및 순세계 잉여금 현황>

(단위: 천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결산상잉여금	이월액	보조금반납	∤금(B)	순세계잉0	벼금(C)
-1·11 C	(A)	ELGGAID	127		B/A		C/A
2018	562,874,774	151,793,331	99,296,450	10,401,281	1.8%	42,095,600	7.48%
2017	538,583,954	139,436,461	99,247,414	6,374,153	1.1%	33,814,894	6.28%
2016	507,097,502	121,345,450	82,579,186	4,719,637	0.9%	34,046,627	6.7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도에 비해 0.7% 4,027백만원 증가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2% 8,281백만원 증가함.

□ 문제점

○ 매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 권고 하고 있으나 시 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월예산 원인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선행 절차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소요예산 추경에 반영 등임.
- ② 보조금 반납 발생은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미흡과 수요조사 및 사업 요건 결여이며,
- 집행 잔액 과다 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적기에 예산 집행의 태만, 추경시 소극적인 감액 결정에 기인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이월 최소를 위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감독이 필요하며 중장기 사업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에 대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과 부서간 사전 협의 및 적기예산 집행의 확고한 의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지속적인 노력 권장.

□ 조치계획

《기획예산담당관》

- □ 2018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원인은 지난해 하반기 태풍 피해로 인해 복구비를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태풍피해 복구 등 국도비 보조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요 인인 가장 크게 작용됨.
 - ※ 태풍피해 복구비 이월액: 3,530백만원
 - ※ 보조금 진행잔액이 2017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원인은 제3회 추경예산 이후 교 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대부분 태풍피해 복구비)이 집행잔액으로 반영된 결과임.
- 또한 2017년 이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내국세 증가 및 지방재정 법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규정 폐지로 지방교부세

- 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군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이월 액이 2016년 대비 2017년부터 증가되었음.
- 따라서, 2018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부분은 태풍피해라는 특수한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사업 비중이 큰 우리군 형편상 정기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감안했을 때 매년 200~300억 정도의 여유자금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다만,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 지연, 토지 미확보 등 사전행절차 지연 및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액 과다 발생과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예산불용 등의 사례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예산편성시 사전행정절차 이행,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단계적 예산편성 등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재정집행과 연계하여 연중 재정집행 제고를 위해 보고회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그리고 자체세입 여건이 취약한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데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 2018년도 최종예산 국도비보조사업 전체 예산 대비 비율: 49%(군비부담금 포함)
-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정부 예산 요구시부터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4. 청사 관리 사업추진 소홀로 이월액 과다 발생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청사 관리 사업비 이월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비 공사기간 ·		이 월 액		UISITLO
인민	사립당	사람비	· 중작기인	계	명시	사고	이월사유
	계	1,734,000		1,025,086	575,000	450,086	
1	본청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0,000	18.3~18.5	20,880		20,880	사업중지 (공법미확정)
2	본청 소방시설 정비사업	75,000		75,000	75,000		미착공
3	본청 도색공사	200,000		200,000	200,000		미발주
4	본청 내진보강 사업	300,000		300,000	300,000		설계중
5	완도군 직원관사 신축공사	1,129,000	18.6~19.01	429,206		429,206	준공시기 미도래

□ 문제점

- 청사관리 사업은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급성을 요한 사업으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기에 사업이 시행 되어야 함에도,
- 사업 사전 준비 부족 및 실시설계 용역의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미 발주 내지 사업 중지되어 청사 관리 세부사업 5건에 1,025,086천원이 과다하게 이월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청사 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조기발주, 공 사의 실행·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기간 요하지 않은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 무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이월액	명시/사고	비고
본청내진보강실시설계	군청사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0,000	0	20,879	사고	
본청 소방시설 정비사업	소방시설 개보수	75,000	0	75,000	명시	
본청 도색공사	군청사 외부 도장공사	20,000	0	200,000	명시	
본청 내진보강 사업비	군청사 내진보강	300,000	0	300,000	명시	
완도군 직원관사 신축공사	완도읍 망석리 190-1(30실)	1,129,000	734,120	429,206	사고	

- ☞ 본청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내진보강 사업 경우 공법선정 위원회를 위한 준비에 있으며 공법이 확정 되는대로 중지되었던 내진보강실시설계 및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음.
- 본청 소방시설 정비사업은 낙찰자 시공능력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하여 설계변경 후 '19.6.에 착공 및 2019.7. 완료예정
- 본청 도색공사는 '19.5.24.계약 완료하였고 '19.5.29. 착공하여 '19.7.27. 준공예정으로 사업완료 하겠음.
- ② 완도군 직원관사 신축공사는 준공을 앞둔 시점에 2018.11.23. 사고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2019.1.16. 준공하여 정산 후 준공금 지급하여 사업 완료하였음.
- 2018년 하반기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사관리 관련 사업이 대소 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
- 향후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포함한 사업 관리감독에 힘쓰겠음.

5. 예산 관리 소홀로 진행중인 사업비 불용처리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 현 황

<진행중인 사업비 불용처리 현황>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지출액	미지출	액 조치	비고
<u></u>	사태경	사립기간	사업비 (계약액)	시골액	이월	불용	미끄
	Й		504,664	155,000	-	349,664	
지 역 개발과	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18.7.20 ~19.5.22	120,000	57,000	-	63,000	2019 제1회 추경계상
"	완 도 군 경 관 관 리 재 정 비 수 립 용 역	18.4.23 ~19.10.17	140,140	98,000	-	42,140	"
안 전 건설과	신지 군도5호선 태풍솔릭 피 해 복 구 공 사	18.12.14 ~19.5.12	227,980	-	-	227,980	"
"	신지 군도5호선 태풍솔릭 피 해 복 구 공 사	18.12.21 ~19.3.27	16,544	-	-	16,544	"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그 예외 사항으로 같은 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서는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당해연도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정확한 검토 과정과 절 차를 거쳐서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이미 계약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비 중 미지출액 4건 349,664천원 불용 처리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당해연도 예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비 중 준공시기 미도래 등 그 회계 연도에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검토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 소 홀함이 없도록 권장함.

□ 조치계획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검토하고 절차를 거쳐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설계 변경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6. 특별회계 체납세입금 징수관리 철저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민원봉사과,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혀 황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 원)

					사	유 별		
구 분		미수납액	행 방 불 명	납세 태 만	접난도	채 무 자 회 생 법 의 유	리 나 원	기 타 (사망자)
	합계	2,004,436	232,987	882,162	59,638	239,402	9,722	660,525
합 계	원금	564,574	44,408	285,266	13,858	90,000	3,052	127,990
	이자	1,439,862	188,579	516,896	45,780	149,402	6,690	532,535
주택자금	소계	812,117	227,470	24,458	59,638	-	9,722	490,829
융 자	원금	150,947	43,408	7,639	13,858	-	3,052	82,990
특별회계	이자	661,170	184,062	16,819	45,780	-	6,670	407,839
주민소득	소계	1,192,319	5,517	777,704	-	239,402	-	169,696
지원 및	원금	413,627	1,000	277,627	-	90,000	-	45,000
생활안정 <u>특별회계</u>	이자	778,692	4,517	500,077	-	149,402	-	124,696

□ 문제점

- 특별회계(주택자금융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체납세입금(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매년 결산 검사 시 지적 및 권고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결산서에 미수납 사유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임.
- 아울러 연체로 인하여 많은 이자가 발생되어 전체 미수납액 중 이자가 71.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부담만 가중되어 감.

□ 개선 및 권고사항

○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세입금 징수 집중관리를 하고, 적극적인 징수관리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징 수가 어렵다고 확인될 때는 결손처분도 검토하기를 권고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민원봉사과》

☞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현황

◆ 지원대상/지원동수 : 무주택자, 수해피해 대상자

◆ 지원동수 : 501동

◆ 융자금액: 1,787백만원(원금)

◆ 회수현황 : 완납 443동, 미수납 58동

○ 추진현황

◆ 2018. 11. :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특별 징수계획 수립

◆ 2019. 01. : 일제조사 및 현황파악 완료

◆ 2019. 01. : 최고장 발부 및 강제징수 예고

○ 향후 추진계획

- ◆ 특별 징수반 구성, 대상자 및 보증인 현장방문 상환 독려
- ◆ 행방불명 등 상환 불가능자 파악, 결손처분
- ◆ 납세태만자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징수
- ◆ 연체, 방치된 빈집 귀농인 등과 연계 매매 후 융자금 상환 독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 ('18. 12. 31. 기준) 체납자 27명, 체납액 1,192,319천원으로 20년 전 농협 위탁 전 군에서 직접 지원한 대출임.
- ② 체납자 대부분이 파산, 사망 등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연대 보증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하였음.
- 미 수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세입금 징수 집중관리를 하고, 체납사유별 관리 및 법적 압류절차 등을 통한 체납액 상환추진토록 노력하겠음.

7. 세외수입 (의료사업) 청구 및 수납업무 철저

(소관부서: 보건의료원)

□ 현 황

<2018 회계연도 세외수입 (의료사업) 징수>

(단위: 천 원)

진료기관별	진 료 건 수	수납액	비고
합 계	81,659	1,035,260	공단수납액
보건의료원	13,223	530,459	
보건지소	42,555	316,509	
보건진료소	25,881	188,292	

□ 문제점

○ 진료기관 대부분이 진료비에 대한 공단 청구 및 수납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지체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하고, 수 납 즉시 세입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보건의료원》

- ☞ 보험급여분 청구담당자 하반기 직무교육 추진(`19.6월 예정)
 - ◆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분 청구에 관한 사항(원청구, 보완청구 등)
- 보건지소 · 진료소 청구 및 수납업무 현장점검 실시(`19.6월 예정)
 - ◆ 공단 청구내역, 진료수입금에 대한 수납 내역 등 세입자료 점검 추진
 - ◆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을 적극 사용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

8.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 강화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 보통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 시 자체노력 정도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전년도 얼마나 증감하였는가에 따라 자체노력 반영
- 자체노력(세출효율화, 세입확충) 항목에 반영한 내역

(단위: 백만 원)

세출효·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증경	<u>.</u>
	연5	Ē별	비연하다	연도별		0 0	
반영항목	2018	2019	반영항목	2018	2019	2018	2019
인건비절감	55	245	지방세징수율제고	64	△240		
지방의회비 절감	20	29	지방세체납액 축소	△532	△865		
업무추진비 절감	53	41	경상세외수입 확충	245	153		
행사.축제성경비절감	840	△673	세외수입 체납액축소	285	△186		
지방보조금절감	△5,142	4,13					
계	△4,174	4,455	계	62	△1,138	△4,112	3,317

□ 문제점

- 보통 교부세 산정 시 세출 및 세입 자구노력에 대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인센티브로 3,317백만원이 반영됨.
 - 세출효율화: 대상경비 절감으로 인센티브(인건비, 지방의회, 지방보조) 5,128백만원과 페널티 △673백만원(행사·축제성경비)으로 증감액은 4,45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세입확충: 경상세외수입 확충 인센티브 153백만원과 페널티로 △1,291백만원 (지방세징수율제고 △240, 지방세체납액축소 △86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186)으로 증감액은 △1,138백만원이 감소됨.

○ 세출효율화 절감노력은 현저하게 좋아 지고 있으나 세입 확충에 대한 자구노력 실적이 미흡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인센티브 반영 비율 확대를 위해 세입확충 및 세출 효율화 노력을 권고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징수 책임담당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등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음. 더 나아가 보통교부세가 증대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여 우리군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9.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철저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완도군재무회계규칙 제75조(세입·세출 외 현금의 종류)
 - 1. 보증금
 - 2. 보관금
 - 3. 그 밖의 잡종금 등(사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을 세입·세출 외 현 금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금 액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기타)
계	2,563,013	755,731	215,888	1,591,394
본 청	2,504,537	732,281	192,467	1,579,789
완도읍	2,113			2,113
금일읍	10,451		4,078	6,373
노화읍	23,450	23,450		
군외면	9,338		9,338	
고금면	2,816		2,816	
보길면	7,189		7,189	
생일면	3,119			3,119

□ 문제점

○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군에 귀속 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 출납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 관리하고,
- 세입·세출외 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 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입·세출로 관리 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② 2018년 12월 31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2,985,612천원 중 보관기간 초과 및 【표】보증금 및 보관금과 잡종금 (기타)은 관련부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세입예산 재원으로 귀속 등 철저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권고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 청구가 없는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전수 조사 및 공시송달을 추진하여 세입 조치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19. 6. : 반환기간 경과 건에 대해 관련부서 전수 조사 실시

◆ 2019. 7.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2019. 9.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처리

10. 보조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불용사업

(소관부서: 전부서)

□ 현 황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보조 사업을 신청시 사업의 내용 산출기초 사업효과 등을 검토 보조 사업을 신청.
- 보조사업 중 2018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중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된 사업.

<2018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 중 전액 미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890,395,746	889,873,746	-	889,873,746	
2018세출예산	발달장애인후견지원 외 19건	593,416,000	592,894,000	-	592,894,000	
명시이월사업	전남형4050희망일자 리장려금지원 외 6건	266,979,746	266,979,746	-	266,979,746	
사고이월사업	작은섬 큰기쁨사업	30,000,000	30,000,000	-	30,000,000	

※ 2018년 보조금 전액불용사업 조서

□ 문제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보조 사업을 신청, 교부결정, 결정통지를 받아 예산 편성 후 사업 추 진이 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함.
 - 2018년 세출예산: 발달장애인 후견지원 사업 외 19건 (592,894천원)
 - 2018년 이월예산: 전남 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지원 외 6건(266,979천원)
 - 2018년 사고이월예산: 작은 섬 큰 기쁨사업 (30,000천원)

○ 충분한 보조사업 검토 없이 보조 사업 신청으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재원을 불용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보조 사업을 신청시 사업의 내용, 산출기초,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보조 사업을 신청토록 권고.
- 보조사업 결정 후 계획사업에 대한 수시 분석을 통하여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울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변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어렵게 확보된 보조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조치계획

《전부서》

☞ 붙임참조

11. 세외수입 미수납액 집중관리 미흡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 세외수입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원)

연도	합계	무재산	해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소송계류	기타
2018	1,340,262,680	2,418,380	2,606,100	1,076,758,550	6,193,140	-	252,286,510
2017	1,543,631,734	543,708,160	1,874,760	953,746,704	-	32,828,340	11,473,770
2016	1,582,993,074	3,800,130	10,838,170	819,890,150	-	44,610,880	703,853,744

○ 2018년도 특정 항목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원)

항목	합계	무재산	해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소송계류	기타
재산임대수입	32,466,690	-	-	32,466,690	-	-	-
사용료수입	11,342,010	-	-	10,441,510	-	-	900,500
수수료수입	6,677,120	-	-	546,200	-	-	6,130,920
부 담 금	335,591,900	-	-	115,600,230	-	-	219,991,670
과징금·과태료	156,999,240	-	-	153,777,910	-	-	3,221,330
기타수입	133,977,980	-	-	113,622,940	-	-	20,355,040
전년도이월액	663,200,240	2,418,380	2,606,100	650,303,070	6,193,140	-	1,679,550

○ 2018년도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 부서별 현황

(단위: 원)

구	분	부 서 명	합 계	납 세 태 만	기 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관광정책과	23,945,620 (1건)	23,945,620	-
	일반부담금	완도읍	71,713,380 (1건)	71,713,380	-
부담금 	일반부담금	맑은물관리 사업소	257,387,130 (6건)	104,216,570	153,170,560
	보상금수납금	민원봉사과	20,322,540 (22건)	-	20,322,540
기타수입	그외수입	농업축산과	62,900,000 (6건)	62,900,000	-
	그외수입	환경산림과	23,799,650 (5건)	23,799,650	-

○ 2018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고액 건별 현황

(단위: 원)

연번	부서명	항목	금액	체납사유	비고
1	완도읍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1,713,380	납세태만	압류
2		1	17,465,160		
3	마은물관리 사업소	취소도 아이지 되다고	39,725,960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1,550,860	- 납세태만 - - -	
5			64,490,610		
6	느어 ★ 니키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보조금	25,000,000		5건, 건당 5,000,000
7	농업축산과	태풍솔릭으로 인한 재난지원반환금	38,000,000	납세태만	
8	환경산림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취급수	17,148,570	납세태만	

[※] 결산검사일 현재 미수납 기준

□ 문제점

- 지난 3년간 세외수입 미수납액 총액은 감소 추세이나 그 내용면에서 납세자의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금액은 증가 추세임.
- 재산임대수익 중 특정법인에 대한 임대료를 납기 일자에 신속하게 수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건별 금액이 고액임에도 납세자의 납세태만을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
- 농업축산과는 태풍피해지원금과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원보 조금 등의 고액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원금의 경우 사전에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후 반환절차가 발생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어야 함.

- ② 고액미수납자에 대한 징수 집중관리를 통해 수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각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 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설치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이나, 해당부서(읍·면) 담당자와 협력하여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이 발생하 지 않도록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체납고지서 발송, 적극적 결손처분 실 시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음. 더불어 해당 부서 별로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보고서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체납자 조 치계획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 해당 부서(읍·면) 담당자가 세외수입 부과 시 정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부과 절차를 안내 및 교육하여 불필요한 반환액 발생을 줄이고,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12. 기금사업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관광정책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 현 황

<기금내역>

(단위: 천 원)

V의디디	71.7.19	2017년말	당해	년도	2018년말
소관부서 	기금명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조성액
관광정책과	식품진흥기금	79,591	4,423		84,014
환경산림과	생활폐기물기금	6,725,762	1,628,299		8,354,061
지역개발과	옥외광고기금	109,213	21,101		130,314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395,660	445,837	292,105	549,392

<당해연도 조성재원>

(단위 : 천 원)

		재원별			
기금명	수입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기타
식품진흥기금	4,423	1,123			3,300
생활폐기물기금	1,628,299	128,299	1,500,000		
옥외광고기금	21,101	1,101	20,000		
재난관리기금	445,837	7,157	149,680	289,000	

□ 문제점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 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 기금 조성 목표액 및 도달 시기를 명확히 한정하고 수입을 늘려가야 할 것인데,
-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기금은 매년 수입은 소액의 예치금 이자와 기 타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이 저조하 며, 이로 인하여 당해기금 목적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중 보통세의 최근 3년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이상 적립 하여야 하나,
 - 2018년도에 기준액 96%(149,680천원)만 확보 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부 기금은 장기간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러므로 고유 목적 사업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순수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체계를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지방세 중 보통세의 평균 1/100을 매년확보(적립) 하도록 권고함.

□ 조치계획

《경제산업국 관광정책과》

□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1억)이 2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1년 박람회 대비 사용예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재원확보와 기금운용계획 등을 숙지하여 건실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경제산업국 환경산림과》

- 생활폐기물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행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과 개선(복구)에 많은 비용이 매년 소요 되는데 반해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 를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함.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 ☞ 옥외광고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 음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 기금 운영 중임.
- 기금의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 ☞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최근3년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이상 적립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실의 협의를 통해 100%확보 추진하겠음.
- 각종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의 도 재난관리기금의 교부를 위해 적극적 으로 사업 건의 및 재난관리기금 교부금을 확보하겠음.

13.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관광정책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 혀 황

<기금별 예금내역>

(단위: 천 원)

ᆺᇌᆸᇪ	기금명	2018년말	기금	관리	세그ㅇ해
소관부서	7100	조성액	보통예금	정기예금	예금은행
합계		9,117,781	162,516	8,955,265	
관광정책과	식품진흥기금	84,014	4,014	80,000	NH농협
환경산림과	생활폐기물기금	8,354,061	173	8,353,888	"
지역개발과	옥외광고기금	130,314	27,627	102,687	"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549,392	130,702	418,690	"

□ 문제점

- 각종 기금의 집행잔액은 집행 시기 등을 판단하고 유휴자금 세수 증 대를 위하여 집행 시기별로 분산.
- 금리가 높은 정기계금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162,516 천원의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부적절하게 관리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기금, 재난관리기금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을 지출시기 등을 판단하여 조기집행 대상 자금을 제외한 유휴 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도록 권고함.

□ 조치계획

《경제산업국 관광정책과》

- ☞ "식품진흥기금"은 정기예금 만기일(`19. 3. 7.)이 도달되어 보통예금과 합하여 85,000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함.
- 이후 조성된 기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경제산업국 환경산림과》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예산을 포함 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음.
- 2018년말 현재 8,354백만원을 "**농협중앙회완도군금고**"에 연간 1.8% (2018년 12월 기준금리)로 예치관리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 "옥외광고기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예금으로 전출 한 이후 보통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적금예금으로 이체를 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음.
- 향후 기금관련 수입계획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보통예금과 적금예금으로 분산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 "재난관리기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의 이자 수입을 위해 정기 예금 해지 및 가입을 기일에 맞춰 실시하고 금리비교를 통해 높은 이자 수입을 확보 추진하겠음.

14.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작성오류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 일반유형자산명세서총계누락

(단위: 원)

회계				감속	노 액					
구분	과목명	기초잔액	증가액	감가상각액	기타 (처분 등)	기말잔액				
	중 략									
총	계	90,524,654,546	17,203,576,266	4,248,044,258	5,903,519,521	97,576,667,033				

○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총계누락

(단위: 원)

회계				감속	노 액				
구분	과목명	기초잔액	증가액	감가상각액	기타 (처분 등)	기말잔액			
	중 략								
총	계	182,457,961,503	37,231,273,889	5,877,790,320	8,484,016,636	205,327,428,436			

□ 문제점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인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총계가 누락되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명세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각 항목별 명세서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올바른 정 보전달이 필요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인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총계 기재함.

1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기재오류 (1)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혀 황

○ 재무상태표 현황 (결산서 p.375)

(단위: 원)

71 0	당해연도 (2018년)							
과 목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계			
미수세외수입금 (주4)	1,340,262,680	1,667,017,746			3,007,280,426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주4)	-26,542,832	-16,671,818			-43,214,650			

○ 재무상태표에 대한 주석사항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현황 (결산서 p.401) (단위: 원)

구 분	금액(A)	대손설정율(%)		대손설정율(%) 대손충당금(B)	
		중	략		
계	3,007,280,426			43,213,010	2,964,067,416

□ 문제점

○ 재무상태표 상의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43,214,650원과 주석사항 대손충당금 43,213,010원 간에 1,640원 차이가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재무상태표 상의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과 주석사항 간에 발생한 차액(1,640원)을 조정하여 재정상태표와 주석보고서 금액 일치시킴.

주석사항 오류 (2)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 8-2 출자금 및 투자주식 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결산서 p.403)

(단위: 백만 원)

구	н	지분율	피투	자기관 재	무상태		장부가액	
	분	(%)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투자주식	완도전복 주식회사	33	12,118	3,022	9,095	64,444	64,981	-537

□ 문제점

○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총비용집계 오류로 순손실로 공시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손익계산서 상 총수익과 총비용의 정확한 집계를 통해 주석사항 오류수정

(단위: 백만 원)

구분		지분율	피투자기관 재무상태			장부가액		
		(%)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투자주식	완도전복 주식회사	33	12,118	3,022	9,095	64,444	63,907	537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재무제표 주석사항 중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오류사항총비용 64,981 → 63,907으로, 순이익 -537 → 537으로 수정함.

주석사항 오류 (3)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황

○ 순자산의 세부내역 합계 오류

(단위: 원)

구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내부 거래	계					
	중 략									
고정순자산 (D=B-C)	1,603,327,529,222	132,928,410,046	113,937,790		1,736,369,877,058					
특정순자산(E)			9,137,636,477		9,137,636,477					
일반순자산 (A-D-E)	138,634,312,597	12,996,381,335			151,630,693,932					

□ 개선 및 권고사항

- 고정순자산 일반회계 합계 1,603,327,529,222원 → 1,603,327,529,492원으로 수정.
- 고정순자산 계 1,736,369,877,658원 → 1,736,369,877,328원으로 수정.
- 일반순자산 일반회계 합계 138,634,312,597원 → 138,634,312,327원으로 수정.
- 일반순자산 계 151,630,693,932원 → 151,630,693,662원으로 수정.
- 재무상태표와 주석사항 간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시고 정확한 작성이 필요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고정순자산 일반회계 합계 1,603,327,529,222원 → 1,603,327,529,492원, 고정순자산 계 1,736,369,877,658원 → 1,736,369,877,328원, 일반순자산 일반회계 합계 138,634,312,597원 → 138,634,312,327원, 일반순자산 계 151,630,693,932원 → 151,630,693,662원으로 수정함.

주석사항 오류 (4)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혀황

○ 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일반회계	기타득별회계	기금	내부거래	계
기타장기미지급금	10,430,705,160				10,430,705,160
기타비유동부채	1,224,721,883				1,224,721,883
차감잔액	11,655,427,043				11,655,427,043

□ 개선 및 권고사항

- 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 중 차감잔액 11,655,427,043원이 재무상태표 상 의 잔액 11,671,309,196원과 15,882,153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2019년도에 기타비유동부채의 코드변경으로 기초잔액 입력 누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차이라고 함.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임.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2019년도에 기타비유동부채의 코드변경으로 기초잔액 입력 누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차이를 조정하여 재정상태표 상의 금액과 일치시킴.

16. 공유재산현황표 잔액 불일치 조정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 특정 계정별 비교내역(재무상태표 vs 공유재산현황)

(단위: 원)

과 목	재정상태표상 잔액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차이 (공유재산 현황기준)		
토지	41,291,516,397	145,857,227,180	104,565,710,783		
무체재산	62,118,588	108,117,060	45,998,472		
회원권	333,600,000	284,674,200	- 48,925,800		

○ 회원권내역(재무상태표 vs 공유재산 현황)

(단위: 원)

구 분	재무상태표	공유재산현황	차 이
대명리조트 단양 (2건)	94,600,000	74,601,600	19,998,400
대명리조트 설악	90,000,000	70,041,600	19,958,400
한화리조트 속초	81,000,000	74,322,000	6,678,000
금호리조트 설악	28,000,000	25,709,000	2,291,000
완도스파(2건)	40,000,000	40,000,000	0
합 계	333,600,000	284,674,200	48,925,800

□ 문제점

-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상 공유재산 현황과 결산검사 첨부 서류인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이 전반적으로 불일치 함.
- 토지, 건물 등의 경우 각 부서에서 취득 시 프로그램 등재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소홀로 재무상태표 상의 잔액과 차이가 큼.
- 동일자산에 대한 통계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음.
- 회원권의 경우 동일한 회원권에 대한 장부가액에 대한 평가가 다름.

□ 개선 및 권고사항

-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e-호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보유하던 공유재산 입력 시 역사적 취득원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취득원가 계상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취득원가 확인에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자산은 대체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차이는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물의 경우 각부서의 담당자들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프로그램 입력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산의 총계에 관한 통계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자산의 회 계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을 실시하여 일원화 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무상태표 상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계 정과 공유재산현황의 무체재산계정에 포함되는 자산의 항목을 일치시 켜 일관성 있는 자산 공시가 필요함.
- 회원권은 재무상태표와 공유재산현황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여 잔액을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과 e-호조 상의 불일치금액을 단계적으로 일치 시켜 향후 토지, 건물 등의 취득, 매각 시 금액상 오류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결산서 작성 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등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재 공유재산 대장상 무체재산계정에 포함되는 자산은 상표와 디자인, 서체, 제조법 등으로 재무상태표상 기타비유동자산 계정에 포함되는 항목과는 차이가 있어 서로의 항목을 비교하여 일치시켜 가도록 하겠음.

- ② 회원권의 재무상태표와 공유재산현황상의 잔액차이는 공유재산 대장 상 2012년 취득당시 금액이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발생한 것으로 공유재산 대장상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 시킬 예정
- 토지, 건물 등 e-호조상의 자산등록내역을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해당 자산에 대한 관리대장이 자동생성되어 공유재산 현황에 집계되는데, 자산취득 담당자들이 e-호조상 자료를 잘못입력하게되면, 잘못된 자료가 공유재산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e-호조 지출내역과 공유재산프로그램상 차이가 발생하게 됨. 해마다 이런 차이들이누적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음.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e-호조상자산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력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 토지 및 건물의 불일치내역에 대하여는 관리부서별로 나누어 금액을 수정하여 순차적으로일치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2019년도 결산서 작성 시에는 담당 회계사에게 재무상태표 작성시 공유 재산 잔액이 산정되는 방식과 재정상태표와 공유재산현황상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17.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현 황

<최근 3년 간 유휴자금 관리현황>

(단위: 백만 원, %)

			2016 է	1			2017년			2018년			
구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l균잔액 다수익)	144,406 (1,620)	135,913 (1,611)	3,225 (9)	5,268	150,758 (1,550)	140,534 (1,541)	3,347 (9)	6,877	190,699 (1,866)	181,220 (1,838)	2,164 (28)	7,315
평	공공 예금	0.5				0.5			0.5				
균 이 자	정기 예금 1개월	1.1		1.1			1.2						
율	정기 예금 3개월		1.2				1.2				1.4		

<최근 3년 간 연평균이자율 추이 분석>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연평균잔액 (A)	144,406	150,758	190,699	유휴자금 평균잔액 증가추세
이자수익 (B)	1,620	1,550	1,866	
연평균이자율 (A/B)	1.12	1.03	0.98	평균이자율의 감소추세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 74조(자금운용)에서는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완도군의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담당자가 성실하게 관리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 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연평균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익에 대한 평균이자율은 2016년 1.12%, 2017년 1.03%, 2018년 0.98%로 감소하고 있음.
- ② 이자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계획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고 봄.
- 월별자금지출 계획을 세워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3개월 이상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자율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더불어 군 금고와 긴밀한 협조,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휴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음.

18. 성과계획서 지표 달성율 0% 및 불합리한 성과지표 개발

(소관부서: 전부서)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의거 성과보고서는 부서 별로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파악하여,
-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과지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 야 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도 사업목적과 연관되게 결과 중 심으로 설정되어야 함.

【표 1】세출결산서 부서 성과지표 달성율 0% 현황

HIM	서기기교	성고	바지표달성현	년 황
부서명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율
자치행정과	소송처리율(%)	80	0	0%
조미보되고!	보훈대상 급여지원	500	0	0%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00	0	0%
여성아동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현황	100	0	0%
	소규모강좌, 자격증강좌 등 학습자 수	2700	0	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55	0	0%
 도자세귶지	향토유적 보수 정비	13	0	0%
	각종 체육대회 유치	20	0	0%
고나고나저 # 그	식품공중위생업소 종사자 서비스마인드 향상(%)	100	0	0%
관광정책과 	어린이 성장단계별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원)	100	0	0%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건수	1	0	0%
L 어ᄎ사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	30	0	0%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0	0	0%
	맞춤형소형농기계지원	200	0	0%
환경산림과	특정도서 환경정화활동 관리	100	100	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100	100	0%
안전건설과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50	0	0%

нли	서기기교	성고	마지표달성 현	년 황
부서명 	성과지표	목표 실 학사운영 12회 15000 라 구축 100 고텐츠 제작 1 0 3,000 백만원 14종 2,379 백만원 世 世 世	실적	달성율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학사운영 12회	0	0%
	적조방제사업	15000	0	0%
해양정책과	낙도해상교통불편해소에 따른 인프라 구축	100	40	0%
	해양헬스케어센터건립 기본계획	1	1	0%
	해양헬스케어 기후 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실용화 연구개발	1	1	0%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5회	0	0	0%
	백신공급 및 면역증강제 보급	3,000 백만원	0	0%
	해조류양식 기반시설 사업추진	2,379	14종 2,379 백만원	0%
수산경영과	어업인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지구 선정	0	0	0%
	육상해수 양식허가처분	85건	0	0%
	불법어업단속	40회	0	0%
	어업지도선 운영	50,000천원	0	0%

【표 2】불합리한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	비고
의회사무과	의회 청사 정비	
기획예산담당관	청렴도를 위한 직원 교육 횟수	
여성아동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여성아동과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실적 보고	
민원봉사과	행복마을 조성	
민원봉사과	전통한옥마을 조성	
관광정책과	관광지 기반시설설치(관광지관리)	
농업축산과	농어민 신문 보급	
환경산림과	나무은행 조성 활착률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정비사업	
해양치유산업과	주민홍보 10회	

□ 문제점

- ○【표 1】과 같이 소송처리율 외 28건의 성과지표 적용 하였으나 추진실 적이 전무하여 성과 지표 달성율이 0%이며,
- ○【표 2】와 같이 청렴도를 위한 직원교육 횟수 외 10건은 불합리한 성과지표 적용 및 목표설정으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도 목표치가 초과 달성되는 지표적용.

□ 개선 및 권고사항

- 매년 100%가 달성 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별도의 적극적 노력이 없어도 초과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도전적인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며,
- 성과관리에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군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군정주요시책이 평가 될 수 있도록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를 개발 적용.

□ 조치계획

《기획예산담당관》

- ☞ 2016년부터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결산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음.
- 최초 시행시 작성한 지표들이 사업성격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으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내역이 있음.
- ② 202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각 부서별로 성과계 획 지표를 사업성격에 맞게 신규 개발하고 수정토록 하겠음.

19. 공유재산 관리 소홀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 현 황

<공유재산 현황(건물)>

소 재 지	건축일자	연면적(㎡)	건축비(천원)	용도	비고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61-7	1994.12.20.	172.44	78,769	노인복지회관	

□ 문제점

- 상기 공유재산은 2011. 8. 31. 금일읍 노인복지회관 신축 지원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2011년 이후 사후관리가 누락됨.
- 현재 상기 공유재산은 관련 단체와 내부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단체에서 자체 징수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과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소관 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 록·유지하시기 바라며
- 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매각 등 효율적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유사사례의 일제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 사항을 공유재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와 별개로 6월중 주민복지과와 협조,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실상 용도가 상실된 건물에 대하여 용도폐지, 대부 및 매각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

※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 ◆ 기 간: 2019. 4. ~ 10.
- ◆ 조 사 자: 부서 및 읍면 재산관리관
- ◆ 보고일정: 2019. 6. 28.(1차보고) / 8. 30.(최종보고) / 9. ~(후속조치)

20.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 현 황

<2018 소규모 숙원사업비(2천만원 이하)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_	ы	합	계	본 7	정집 행	읍 면	재 배 정	비고
	구	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소관부서)
	합	계	612	10,780,637	121	1,588,434	491	9,192,203	
	<i>소</i> 민	⊆규모 원처리	116	2,159,535	43	771,535	73	1,388,000	지 역 개발과
	소득기	기반 정비	104	1,944,400	3	56,400	101	1,888,000	"
	기초	생활시설	109	2,123,430	4	63,430	105	2,060,000	<i>'</i>
세 부	농업·	생산기반	21	362,366	2	17,099	19	345,267	안 전 건설과
사	도로	시설개선	78	902,027	39	333,248	39	568,779	"
업 명	소규	∤모농로 정비	82	1,615,336	1	17,937	81	1,597,399	<i>'</i>
	소 용	└규모 배수로	47	886,654	4	33,510	43	853,144	<i>'</i>
	소하	천 관리	29	514,450	11	171,886	18	342,564	"
		선시설물 관리	26	272,439	14	123,389	12	149,050	<i>'</i>

□ 문제점

- ② 2018년도 군 본청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소규모 숙원사업비 총액은 612건에 1백7억8천만 원임. (보조사업과 20건 미만 사업제외)
- 사업비 중 85%인 91억 9천2백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
- 재배정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계약의 투명성 저해 우려.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술적,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읍
 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소규모 숙원사업의 적시성과 편의성
 성 지표달성에 용이.
- 군 읍면 간 업무의 균형 배분과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 예산편성 요구시 읍면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 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음.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 세출예산 집행계획 수립 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군, 읍·면 간 업무의 균형 배분과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21. 지방보조금 사업 정산 검사 소홀

(소관부서: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 현 황

<보조금 사업 신축건물 미등기 현황>

소재지	사업비 (천원)	연면적 (㎡)	착공일	준공일	용도	비고
금일 신구 329	300,000	126	2017.12.7	2018.6.22	마을회관	
청산 부흥 301	250,000	105	2017.10.6	2018.8.3	마을회관	
금일 충동 32-1	350,000	126	2018.11.12	2019.1.31	마을회관	
금일 화목 973-2	300,000	141	2011.4.1	2011.8.31	경로당	2017증축
고금 가교 694	400,000	183	2017.8.10	2019.2.21	경로당	

□ 문제점

- 지방보조금사업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여 2017 ~ 2018년도에 신축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19개소 중 위와 같이 5개소가 결산검사일현재까지 미등기 되어 있으며,
- 금일읍 화목리 노인분회 경로당은 2층 증축분 건축물 관리대장 미생성 및 건물등기 미필.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보조금 사업이 완성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정산검사) 및 제23조(감독 등)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 보존등기와 건축물대장 등을 작성하여 시설물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완성된 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조속히 소유권 보존등기와 건축물대장 등을 작성하겠음. 앞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시설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 미등기된 마을회관 신축3건에 관하여 각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완도군 조례에 의거 정산검사 시소유권 보존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22. 물품관리(정수와 사용기준) 철저

(소관부서: 전부서)

□ 혀 황

○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와 물품관리조례에 근거 물품(정수) 관리.

【표】주요 물품별 정수승인 및 보유 현황

물품명	단위	책정수량 ¹⁾	배정수량 ²⁾	보유수량3)		증감		비고
<u> </u>	근퓌	(A)	(B)	(C)	A-B	A-C	В-С	0175
합 계		386	184	555	202	△169	△371	
미니버스등 차량	대	42	11	53	31	△11	△42	
복사기	대	71	20	90	51	△19	△70	
냉난방기	대	221	149	351	72	△130	△202	
문정전전원장치	대	10	0	15	10	△5	△15	
비디오프로젝트	대	42	4	46	38	$\triangle 4$	△42	

[※] 완도군(세무회계과) 제출 자료 재구성

□ 문제점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표】주요 물품별 정수승인 및 보유 현황과 같이

¹⁾ 행정자치부 정수 책정기준 수량

²⁾ 정수승인 수량

³⁾ 구입(취득) 물품 보유 수량

- 가. 행정자치부 기준대비 169대의 주요물품이 초과되었으며 정수승인대비 보유대수가 371대를 초과보유하고 있으며,
 - 미니버스 등 차량이 정수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1대
 - 복사기 행정자치부 기준대비 19대
- 냉난방기 130대 등
- 나.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을 정수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 보유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직원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관련법 적용에 적정을 기하고 이후 물품관리 및 예산 요구와 편성집행과정 에서 정수대상 물품배정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전 실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 구입비는 세무회계과에 일괄 예산편성 구입하여 사용부서에 배분 운영 권고.

□ 조치계획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

- ☞ 전부서 및 읍면 정수물품 실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행화하고,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책정, 정수배정 승인을 차년도 예산수립 전까지 재정비하여 정수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아울러, 전부서 및 읍면 분임물품출납원(서무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서 정수대상물품은 반드시 정수 승인요청 등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 하여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표】물품정수관리현황 (부서명)

번호	품 명	물품분	류 단위	정 수 (실보유량)			비고
	L O	번호		종전	변경	증감	,
1	미니버스		대				
2	버스		"				
3	일반승용차		"				
4	미니밴또는	31]	"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9-06-28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송지영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9-19	9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시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리 고시하고자 합니다.	l축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동법 행령 제22조∼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2시하고자 합니다.							
내용	붙임 1.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	<u></u>							
	2. 도로명주소 고시문	(2019-06-28). 끝							

완도군 고시 제2019- 호

도로명주소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완도군수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76)에 문의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성명	고지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	t법 소유자구분
오경철	36440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25-24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789번길 230-42	3 20081103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기초구간을 설정하여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9길 75 (남성동	1차	소유자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9-06-03	담당부서	수산경영과	장길성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36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9년 해양수산사업(어패류양식팀) 추가 사업자 선정 알림								
내용	2019녀 해양수산사업 추가 선정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해양수산사업자 추가 선정 결과





완 도 군 (수산경영과)

2019년 어패류양식분야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군비 광어양식전용 액화산소용해기 지원사업 선정 내역

¬ н	и а н	사 위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	선원)	ul ¬
구분	사 업 명	주소	성 명	(대)	계	군 비 (50%)	자 담 (50%)	비고
계				38	190,000	95,000	95,000	
1		완도읍	곽홍재	2	10,000	5,000	5,000	선정
2		군외면	김양곤	4	20,000	10,000	10,000	선정
3		군외면	김정현	4	20,000	10,000	10,000	선정
4		군외면	김재홍	4	20,000	10,000	10,000	선정
5	광 어 양 식	군외면	김홍진	4	20,000	10,000	10,000	선정
6	전용 액화	신지면	임민석	4	20,000	10,000	10,000	선정
7	산 소	신지면	허궁희	2	10,000	5,000	5,000	선정
8	용 해 기 지원사업	신지면	김양임	2	10,000	5,000	5,000	선정
9	시 전 시 집	고금면	김향권	2	10,000	5,000	5,000	선정
10		고금면	이인환	4	20,000	10,000	10,000	선정
11		고금면	최혜란	2	10,000	5,000	5,000	선정
12		고금면	최혜란	2	10,000	5,000	5,000	선정
13		약산면	방송애	2	10,000	5,000	5,000	선정

군비 전복선별기 지원사업 선정 내역

74 11 24 11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	천원)		
구분	사 업	명	주소	성 명	(대)	계	군 비 (50%)	자 담 (50%)	비고
계					18	158,400	79,200	79,200	
1			완도 망남	어촌계장 황지현	1	8,800	4,400	4,400	선정
2			금일 감목	어촌계장 김영석	1	8,800	4,400	4,400	선정
3			금일 일정	어촌계장 천행환	1	8,800	4,400	4,400	선정
4			금일 동백	어촌계장 김병철	1	8,800	4,400	4,400	선정
5			금일 소랑	어촌계장 권오열	1	8,800	4,400	4,400	선정
6			노화 미라	어촌계장 김상봉	1	8,800	4,400	4,400	선정
7			노화 동고	어촌계장 백순길	1	8,800	4,400	4,400	선정
8		ы	노화 북고	어촌계장 김현식	1	8,800	4,400	4,400	선정
9	전	복	노화 서리	어촌계장 이오택	1	8,800	4,400	4,400	선정
10	선 별 지 원 시	기	군외 당인	어촌계장 유민완	1	8,800	4,400	4,400	선정
11	시 권 ^ 	Ιظ	군외 흑일	어촌계장 유명환	1	8,800	4,400	4,400	선정
12			청산 지리	어촌계장 이승열	1	8,800	4,400	4,400	선정
13			청산 국화	어촌계장 임춘하	1	8,800	4,400	4,400	선정
14			소안 서중	어촌계장 최규산	1	8,800	4,400	4,400	선정
15		소안 구도	어촌계장 김갑송	1	8,800	4,400	4,400	선정	
16		보길 백도	어촌계장 최정욱	1	8,800	4,400	4,400	선정	
17			보길 정자	어촌계장 고승길	1	8,800	4,400	4,400	선정
18			생일 서성	어촌계장 정종관	1	8,800	4,400	4,400	선정

군비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지원사업 선정 내역

1FOLE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사업명	주소	성 명	시합당	계	국비	군 비	자 담	미포
전복우량종자 해 조 류 먹 이 지 원 사 업	완 도 군 전 복 종자협회	정 성 권	1식	120,000	-	30,000	90,000	선정

군비 유용미생물 육상양식장 공급사업 선정 내역

사업명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시비리	주소	성 명	^l ⊟ G	계	국비	군 비	자 담	-1- 1
유용미생물 육상양식장 공급사업	완도 가용	전남서부 어류양식 수협장	1식	60,000	-	30,000	30,000	선정

군비 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지원사업 선정 내역

사업명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시합경	주소	성 명	시티딩	계	국비	군 비	자 담	U 14
양식 광어 비 상 품 어 수메지금 지원	완도 가용	전남서부 어류양식 수협장	1식	144,000	-	72,000	72,000	선정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9-06-17	담당부서	수산경영과	박흥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39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	어업면허 처분하였기에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안)1부. 끝.						

완도군공고 제2019 - 호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06월 14일

완 도 군 수

□ 어업권 포기신고내역

면허	어업의	품 종	포기 면적	어장	어 업	권 자	포기	포기일자
번호	종 류	<u> </u>	(ha)	위치	주 소	성 명	사유	도기 될까
계	7건		52.0ha					
11328	패류	굴 등	4.0	약산 천동	약산 천동	천 동 어촌계	재개발	2019. 06. 12 본 승인 40번 굴 4ha포기, 패 류(굴 등) 4ha 재개발
11411	패류	바지락 등	9.0	고금 내동	고금 내동	내 동 어촌계	재개발	2019. 06. 12 본 승인 49번 바지락 9ha포기, 패류(바지락 등) 9ha 재개발
11412	패류	꼬막 등	5.0	고금 내동	고금 내동	내 동 어촌계	재개발	2019. 06. 12 본 승인 50번 꼬막 5ha포기, 패류(꼬막 등) 5ha 재개발
11439	패류	전복 등	2.0	신지 내정	신지 내정	내 정 어촌계	재개발	2019. 06. 12 본 승인 54번 전복 2ha포기, 패류(전복 등) 2ha 재개발
11438	패류	전복 등	5.0	신지 양지	신지 양지	양 지 어촌계	재개발	2019. 06. 12 본 승인 55번 전복 5ha포기, 패류(전복 등) 5ha 재개발
11416	복합	미역, 가리비 등	15.0	고금 봉암	고금 봉암	봉 암 어촌계 외 1	재개발	2019. 06. 12 본 승인 97번 미역,가리비 15ha포기, 복합(미역·가리비 등) 15ha 재개발
2231	마을 어업	패류, 해조류, 정착성 수산동물	12.0	약산 천동	약산 천동	천 동 어촌계	재개발	2019. 06. 12 본 승인 100번 마을어업 12ha포기, 패류,해조류 정착성 수산동물 12ha 재개발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어업의	어업의	ш ж	어장	면적	어앝	권자	마루기기기	수면
번호	종 류	방 법	품 종	위치	(ha)	주 소	성 명	면허기간	번호
계	7건				52.0ha				
14189	패류	연승수하식	굴 등	약산 천동	4.0	약산 천동	천 동 어촌계	2019. 06. 13 2029. 06. 12	본 40
14190	패류	살포식	바지락 등	고금 내동	9.0	고금 내동	내 동 어촌계	2019. 06. 13 2029. 06. 12	본 49
14191	패류	살포식	꼬막 등	고금 내동	5.0	고금 내동	내 동 어촌계	2019. 06. 13 2029. 06. 12	본 50
14192	패류	투석식	전복 등	신지 내정	2.0	신지 내정	내 정 어촌계	2019. 06. 13 2029. 06. 12	본 54
14193	패류	투석식	전복 등	신지 양지	5.0	신지 양지	양 지 어촌계	2019. 06. 13 2029. 06. 12	본 55
14194	복합	연승수하식	미역, 굴, 가리비 등	고금 봉암	15.0	고금 봉암	봉 암 어촌계 외 1	2019. 06. 13 2029. 06. 12	본 97
2512	마을 어업	도수 <i>,</i> 나잠	패류, 해조류, 정착성 수산동물	약산 천동	12.0	약산 천동	천 동 어촌계	2019. 06. 13 2029. 06. 12	본 100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9-06-20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황주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4	0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	D.
내용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 아래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조성사업」의 투명 약'제안서(정성적)	경하고 공정한 협상대상자 평가위원을 공개모집 하	선정을 위하여 오니 많이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조성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정성적) 평가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일

완 도 군 수

1.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2. 모집분야 : 디자인(공공디자인·시각·환경·종합 등), 경관, 조경, 건축, 토목(구조분야)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워

구분	디자인, 경관 분야	조경, 토목(구조분야), 건축	비고
평가위원 수	4	3	
예비 평가위원 수	12명 이상	9명 이상	

- ※ 해당 분야별로 위원을 추첨하되, 평가위원 모집수가 해당분야 평가위원수의 3배수가되지 않을 시 접수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 실시
- ※ 신청서(전문분야 항목)에 위 모집분야 중 1개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가. 자격조건 ※신청서(자격조건)에 아래 자격조건 중 1개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인 자
 - ③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 ④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나. 자격 제외자

-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자
-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 ▶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안내

가. 모집기간 : 2019. 6. 20.(목) ~ 2019. 7. 2.(화) 18:00

나. 접 수 처 :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경관관리팀 / 061-550-5611

다.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hik8281@korea.kr)

- ▶ (우편접수)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지역개발과(4층)
- ▶ (전자메일접수) 마감일, 시간 등 이메일 전송 여부 본인확인 필수
 - ※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 등기 및 전자메일 접수인 경우 반드시 접수사실을 전화로 확인(061-550-5611)
- 라. 제출서류
 -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시 : 2019. 7. 9.(화)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7인(예비자 2인)

다. 선정방법

- ▶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여업체가 분야별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7명)
- ▶ 다빈도순, 고령자순으로 후보자의 우선순위 결정
- ▶ 평가위원의 불참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2명 추가 선정
- 라. 선정결과 통보: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전화 통지(비공개)
 - ※ 연락불능, 불참시 차순위자 선정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19. 7. 12.(금) 14:00

나. 평가장소 : 완도군청 2층 상황실

다. 평가대상 : 제안서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 유찰 등 입찰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지

7.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879-127 일원(빙그레공원 일대)

다. 주요내용

- ▶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문제분석, 사업대상지 주민의견 반영
- ▶ 개선방안 도출 과 안전을 바탕으로 디자인(안) 개발
- ▶ 안전 환경 디자인 적용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 ▶ 향후 관리방안 제시, 최종성과품 제출
- ▶ 사업진행사항 보고 및 기타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디자인, 설계, 제작설치 포함)

8. 기타사항

- 가.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u>반드시 제안서 평가일</u> [2019. 7. 12.(금) 14:00]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경관관리팀(2061-550-5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등록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3. 보안각서 1부. 끝.

[붙임 1]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	등록번호		_	
전문분야	(디자인, 경관,	조경, 토목, 건축) 택일	_	가위원 격조건		②, ③, ④) 택일 도시 증빙서류 붙임)	•
자 택	주 소					(우)
\(\frac{1}{1}\)	전화번호			휴디	ᅢ폰		
	직 장 명	직 장 명 직위(직급)					
직 장	주 소					(우)
H 0	전화번호			팩스	번호		
	E-mail						
	취득년월일	학 교		학	위	전 공	
학력사항							
7770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경력사항							
(최근3년)							
	취득년월일	자 격 증 명		인가・된	반리기관	비고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	------	------	----	------	---	--------

0010	
2019.	

성 명: (서명)

완도군수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인적사항 ~ 3.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렬 까지 작성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협회등은 등급으로 기재
 - ※ 모집분야(디자인, 경관, 조경, 건축, 토목(구조분야)) 1개 명시
 - **※** 자격조건 (①, ②, ③, ④) 1개 명시하고 그에 맞는 증빙자료 첨부함.
- 4.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최종학력만 기재
 -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등
 - 이수, 졸업, 수료 등
-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서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 7. 주요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을 기재
-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 9. 지원서 작성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된 기재나 표기를 한 경우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T	
성 명		생년월일	
	군에서 시행하는 「빙그레공· 록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		
	2019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완도군수 귀하
● 안도군은 「! ○ 완도군은 「! 아래와 같은	인정보의 항목]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 = 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 ·	
【 개인정보 수 ○ 「빙그레공원	· 집 목적 】 원 그린폴(Green-fall) 조성사업 _』 .	제안서 평가위원 여	ᅨ비명부 작성
파기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보존사유 나. 관련 법령 - 보존기간		·래의 이유로 명시 관련된 위원정보 ·	l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붙임 3]

보 안 각 서

본인은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빙그레공원 그린폴(Green-fall)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상기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 (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의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4.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 법 규에 의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서약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9-06-24	담당부서	수산경영과	김수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4	-1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	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	·정에 의하여			
LIIR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신	·업법 제8조 제1항의	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내용 처분하였기에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당	및 어업면허 처분 공	B고(안)1부. 끝.				

완도군 공고 제 2019 - 호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수산 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6. 24.

완 도 군 수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권 포기 신고내역

면허	어업의	<u> </u>	포기	어장	어약	법권자	포기	
번호	종 류	품 종	면적 (ha)	위치	주소	성명	사유	포기일자
계	9건		38.0					
12804	해조류 양 식	다시마등	4.0	고금 교성	고금 교성	어촌계	대체개발	2019. 6. 24. 본승인 37번 다시마4ha포기 다시마2.9ha 2.9ha 대체개발
11434	복합 양식	가리비, 김 등	4.0	고금 상정	고금 사정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98번 김,가리비4.0ha포기 4.0ha 재개발
11437	복합 양식	다시마 미역 등	16.0	소안 서중	소안 서중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35번 다시마, 미역 등 16.0ha포기 16.0ha 재개발
11308	패류 양식	전복 등	2.0	소안 월항	소안 월항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57번 전복2.0ha 포기 2.0ha 재개발
11397	패류 양식	전복 등	1.0	소안 가학	소안 가학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58번 전복1.0ha포기 1.0ha 재개발
11398	패류 양식	전복 등	1.0	소안 비자	소안 비자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59번 전복1.0ha포기 1.0ha 재개발
11399	패류 양식	전복 등	5.0	소안 횡간	소안 횡간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60번 전복5.0ha포기 12.0ha 재개발
11400	패류 양식	전복 등	2.0	소안 부상	소안 부상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61번 전복 2.0ha포기 2.0ha 재개발
11401	패류 양식	전복 등	3.0	소안 북암	소안 북암	어촌계	재개발	2019. 6. 24. 본승인 62번 전복3.0ha포기 3.0ha 재개발

□ 어업권 처분 내역

면허	어업의	어업의	품 종	어장	면적	어약	널권자	면허기간	수면	
번호	종 류	방 법	古る	위치	(ha)	주소	성명	[원에기산	번호	
계	9건				36.9					
14195	해조류양식	연 승 수하식	다시마 등	고금 교성	2.9	고금 교성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37	
14196	복합양식	연 승 수하식	김, 가리비 등	고금 상정	4.0	고금 상정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98	
14197	복합양식	연 승 수하식	다시마, 미역 등	소안 서중	16.0	소안 서중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35	
14198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등	소안 월항	2.0	소안 월항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57	
14199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등	소안 가학	1.0	소안 가학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58	
14200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등	소안 비자	1.0	소안 비자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59	
14201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등	소안 횡간	5.0	소안 횡간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60	
14202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등	소안 부상	2.0	소안 부상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61	
14203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등	소안 북암	3.0	소안 북암	어촌계	2019.06.24 2029.06.23	본 62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9-06-27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최만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42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1. 우리군 관내에 장기간 무단빙 미거주(부재),	· 차지된 자동차의 소유	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공시송달하고,	이 불가능한 자에 대	하여 행정 절차법 제143	E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시(폐차)하고자					
	2.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인은 공고기간내 자	진처리 및 권리행사(대	체 압류 등)를					
	기간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Q 알려 드립니다.	\$을 경우 권리를 포 <i>기</i>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기	데처리(폐차)함을					
내용	가. 공고기간 : 2019. 06. :	27. ~ 2019. 07. 10	6.(20일간)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 퉡	붙임 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	응고기간 이후							
	라. 강제처리(폐차)장소 : 완도폐차장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권	리행사 통보 내역 1	부.						

완도군 공고 제2019 - 422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하도록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26조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27일

완 도 군 수

1. 공 고 기 간 : <u>2019년 06월 27일 ~ 2019년 07월 16일(20일간</u>)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기간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완도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 : 붙임참조

5. 기 타 유 의 사 항:

-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됩니다.
-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15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동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61-550-5582)

무단방치자동차 권리행사 통보 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 유 자		권리자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분	촉탁일자	촉탁기관	공문서번호	압류내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압류 압류		완도경찰서 전남 완도군 경제산업과	2017D182000536 - 경제산업과-	과대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82070120141958) 체납처분에의한압류(20170112000087)	
1	10소1225	NEW그랜저XG LPG	문**	번길 **	합류 라 라	2017.08.21 2016.03.08 2014.01.09	완도경찰서 완도군청 완도군	2017D182000365 세무회계과-583 지경-165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82070170080838) 지방세체납액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 과태료 대체압류(07마6522)	
	29 ¹ / ₂ 7039	에쿠스	김**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신지로 ***-*	마 마 마 마	2019.05.08 2018.06.07	나주경찰서 나주시청 나주시청 경제교통과	2019D180600344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과대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80670190004384) 채납처분에의한 압류등록(20180409001055)	
					대 대 대 합 합 합	2018.04.16 2017.11.27	나주시청 경제교통과 나주경찰서	경제교통과- 2017D180601343	의무보험 과태료 1.2월 부과분(20180111002043) 의무보험 과태료 1.2월 부과분(2018011100204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80670170407253)	
					마 마 마 압 압 압	2016.09.09 2016.08.24 2016.08.11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 당진지서-T53492 주차지도과	체납처분에 의한 암류등록 체납처분에 의한 암류 등록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5-110707]	
					압류 압류 압류	2016.07.11 2016.04.27 2016.02.04		주차지도과502 2016D180600792 2016D180600131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4-11134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8067015069189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80670150542135)	
					압류 압류	2015.11.17 2015.04.10	나주경찰서 광주 북구	2015D180601192 교통지도과-5912	과대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80670150400267) 주정차위반과대료[2014-12-100380] (대체:42허6760) 지방세체납	
					마 마 마 합 합 합	2012.08.06 2012.03.21 2011.12.13	전라남나 나주시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세무과 광주북부경찰서	세무과-0806 세무과-5273 2011D24050374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과대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40570110495089)	
					합류 합류 합	2011.09.27 2011.05.24 2011.04.21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광양시청 세정과	교통63310- 교통63310- 세정과-7064	과태료 체납(240570110261874) 과태료 체납(240570100905556) 지방세 체납 처분	
					합류 합류 합류	2011.03.22 2011.02.22 2011.02.15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로 체납(240570100720425) 과태로 체납(240570100652470) 과태로 체납(240570100639641)	
					압류 압류	2011.01.04 2010.11.03	안중출장소지역경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지역경제과-103 자격징수부-	주정차위반과태료(2010-12-000656)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마 마 마 압 압 압	2010.08.09 2010.08.09 2010.08.09	광주광역시북구청환경과 광주광역시북구청환경과 광주광역시북구청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대체:870/3989)10.1기 환경과-11253 환경개선부담금(대체:87出7545)10.1기 환경과-11253 환경개선부담금(데체:87고1234)10.1기 환경과-11253	
					합류 합류	2010.04.06 2010.01.15 2009.08.18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광주광역시 북구청(교통과 410-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교통63310- 교통과-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972405082710) 검사지연 등 과태료체납 과태료 체납(200972405019488)	
					압류 압류 압류	2009.07.28 2009.06.02 2009.05.18	광주북부경찰서(062-612-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광역시 북구 ☎410-8927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과-19790	과대료 체납(200972405014334) 과대료 체납(200872405082774) 주정차위반[2008-11-100055] (대체:광주50라4791)	
2					하다 다 다	2009.05.13 2009.05.13 2009.05.13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대로 체납(200872405063170) 과대로 체납(200872405029342) 과대로 체납(200872405029181)	
					압류 압류	2009.05.13 2009.05.13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과대료 체납(200872405018563) 과대료 체납(200872405010229)	
					마 마 마 압 압 압	2009.05.13 2009.05.13 2009.05.13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료 채남(200772405050016) 과태료 채남(200772405025951) 과태료 채남(200772405024050)	
					합 유 유	2009.05.13 2009.05.13 2009.05.13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772405017244) 과태료 체납(200772405017057) 과태료 체납(200772405016482)	
					압류 압류 압류	2009.05.13 2009.05.13 2009.05.13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772405003420) 과태료 체납(200771826035330) 과태료 체납(200771826019594)	
					압류 압류	2009.05.13 2009.05.13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671826054067) 과태료 체납(200671826031421)	
					합류 류 라	2008.10.16 2008.10.16 2008.08.13	광주광역시 북구 ☎062-410-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과-36563 교통과-36563 교통63310-	주정차위반[2008-02-202086] (대체:광주50라4791) 주정차위반[2008-02-100899] (대체:광주50라4791) 과대료 채납(200872405029181,40000)	
					마 마 마 압 압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료 채남(200872405029342,40000) 과태료 채남(200872405018563,40000) 과태료 채남(200872405010229,40000)	
					압류 압류 압류	2008.03.26 2008.01.08 2007.12.12	광주광역시 북구(환경과) ☎510-	교통63310- 환경과-418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772405050016,40000) 정밀검사지연과태료(20,000) 과태료 체납(200772405025951,40000)	
					합류 합류	2007.12.12 2007.11.21 2007.11.21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772405024050,40000) 과태료 체납(200772405017057,70000) 과태료 체납(200772405017244,70000)	
					압류 압류	2007.11.21 2007.10.10		교통63310- 교통63310-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772405016482,40000) 과태료 체납(200772405003420,70000)	
					합류 류 라	2007.09.05 2007.07.13 2007.06.13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과-22011 교통63310-	과태료 채날(200771826035330,40000) 주정차위반[2007-05-104167] 과태료 채날(200771826019594,70000)	
					압류 압류	2007.01.30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광주북부경찰서(062-264-	교통63310-	과태료 체납(200671826054067,40000) 과태료 체납(200671826031421,40000)	

무단방치자동차 권리행사 통보 내역

변호	차량번호	차명	소 유 자		권리자현황					
	7,52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분	촉탁일자	촉탁기관	공문서번호	압류내역	
					압류	2018.12.13	경기도 과천시 안전도시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2018년 2기분 체납압류	
					압류	2017.12.20		환경위생과-	2017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2017.08.01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2017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처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2기분 체납압류	
					압류 압류	2016.12.26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2기군 세합합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2016년1기분)	
					압류	2015.12.21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2015년 2기분)체납압류	
					압류	2015.06.23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2014.12.23		환경위생과-	환경부담금 2014년 2기분 체납	
					압류	2014.07.18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198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환경개선부담금 2013년 2기분 체납압류	
					압류 압류	2013.12.26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2013년 2기군 세립립류 환경개선부담금 2013년 1기분 체납압류	
					압류	2012.12.21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2012.12.21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2012.08.17	과천시장	교통과-36593	책임보형(검사)과태료	
					압류	2012.08.06		세무과-6974 환경위생과-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압류	2011.12.14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세무과(02-3677-	세무과-8267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2011.2기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2011.07.20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2011.1기분)	
					압류	2011.01.31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909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압류	2010.06.14		환경위생과-0614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2010.1기분)	
					압류	2010.03.15	차량관리사업소차량관리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2009-10-001815) 환경계성보다고(20092) 웹타이르	
		이스타나	0 **	경기도 과천시 광창로 **(과천동)	압류 압류	2009.12.29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	환경개선부담금(20092) 체납압류 환경개선부담금체납(2009.1기분)	
3	경기75구2316				압류	2009.01.06		환위-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2008.09.09	경기도 시흥시 TEL)031-310-	주차단속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압류	2008.07.22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위-0722	환경개선부담금체납(2008.1)	
					압류	2008.03.26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위-0326	환경개선부담금체납(2007.2) 환경개선부담금체납(2007.2)	
					압류 압류	2008.01.10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위-0110 환위-0723	환경개선부당금제답(2007.2) 환경개선부당금체답(2007.1기분)	
					압류	2007.01.23		환경위생과-0123	환경개선부당금체납(2006.2)	
					압류	2006.08.04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0804	환경개선부담금체납(2006.1)	
					압류	2006.06.22	서산시장	도로교통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0117	환경개선부당금체납(2005.2기분)	
					압류 압류	2005.12.12	과선시성 과천시장	교통-20170 교통과-13838	책임보험과대료 책임보험과대료	
					압류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0704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과천시장[300000원]	교통과-	정기검사과태료체납	
					압류	2005.01.05	경기도 과천시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0105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	2004.07.02		환경위생과-0702	환경개선부당금체납	
					압류 압류	2004.06.0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위반 주정차위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압류		인천부평구청장	교통행정과-	물법주정차	
					압류	2004.04.20	인천광역시장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	
					압류	2004.01.15		환경위생과-580	환경개선부담금체납에따른 압류등록	
					압류	2003.10.20		교행91123-	주정차위반	
					압류 압류	2003.08.05		교지63310-1355 지징1621-4442	주정차위반 체납	
					압류	2014.12.10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8-103573]	
			park h***** k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PSC *** BOX ** APO AP ****	압류		서울용산경찰서	2014D11100290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40435248)	
					압류	2014.11.10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7-106902]	
					압류		서울용산경찰서	2014D11100276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40341446)	
					압류 압류	2014.10.06		교통지도과-5763 주차사업팀-8233	주정차위반과대료[2014-05-102521] 부정주차요금 체납	
		BMW 330i			압류	2014.09.23	서울용산경찰서	2014D11100268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40266447)	
	16С-17637				압류	2014.09.02	서울용산경찰서	2014D11100173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40217992)	
					압류		서울용산경찰서	2014D11100156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40094002)	
					압류	2014.07.08	서울 서초구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2-106641]	
4					압류 압류	2014.06.05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2014-01-102646]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2013-12-102073]	
					압류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2013-12-102072]	
					압류	2014.05.14	서울용산경찰서	2014D111001014		
					압류			교통지도과-5660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2-102908]	
					압류	2014.04.07	서울 용산구	교통지도과-5639 2014D111000208	주정차위반과태료[2013-11-102357]	
					압류 압류		서울용산경찰서 서울 시청	교통지도과-	과태료 제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30389271)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2013-07-101381]	
					압류	2013.12.04		2013D111001215	과대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30239463)	
					압류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2013-05-101809]	
					압류		서울용산경찰서	2013D11100117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30167712)	
					압류		서울용산경찰서	2013D11100085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30068880)	
					압류 압류	2013.06.10		교통지도과-5427 교통지도과-5346	주정차위반과대료[2013-01-101740] 주정차위반과대료[2012-09-102586]	
					압류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型等从上班-5346 2013D111000026	과대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1070120254692)	
					압류	2012.12.06		교통지도과-5304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7-102598]	
					압류			교통지도과-5263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5-102322]	
			1	1	압류	2012.09.05	서울 강남구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과태료[2012-05-106990]	